

제315회 국회
(임시회)

국회 본회의 회의록

제 6 호

국회사무처

2013년5월7일(화) 오후 6시30분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3년도 기술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
3. 2013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
4. 2013년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
5. 2013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6. 2013년도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7. 2013년도 무역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
8. 2013년도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9. 경기도 여주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10.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안
11.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3.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1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5.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 농림수산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17.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1.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4.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5.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6.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8.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29.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0.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1.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3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3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7.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8.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39.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0.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4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의된 안건

- 9. 경기도 여주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 3
- 10.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안(박성호 의원 대표발의)(박성호 · 김기선 · 유승우 · 박덕흠 · 金永柱 · 윤재옥 · 황영철 · 고희선 · 강기윤 · 이찬열 · 유대운 · 백재현 · 박남춘 의원 발의) 3
- 11.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 3
- 12.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 3
- 13.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 3
 -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
 - 2. 2013년도 기술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 5
 - 3. 2013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 5
 - 4. 2013년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 5
 - 5. 2013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5
 - 6. 2013년도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5
 - 7. 2013년도 무역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 5
 - 8. 2013년도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5
- 1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박덕흠 · 김세연 · 유일호 · 안홍준 · 한선교 · 김용태 · 신동우 · 윤상현 · 이우현 · 정두언 · 송광호 · 李宰榮 · 박대출 · 김동완 · 이노근 · 주영순 · 정우택 · 박창식 의원 발의) 13
- 15.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홍문표 · 김영록 · 노철래 · 김춘진 · 정문헌 · 김우남 · 김태환 · 유성엽 · 윤명희 · 강석호 · 주영순 · 정희수 · 하태경 의원 발의) 13
- 16. 농림수산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3
- 17.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13
- 1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14
- 1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14
- 20.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림 의원 대표발의)(문정림 · 이인제 · 이낙연 · 김정록 · 홍지만 · 이명수 · 이자스민 · 金永柱 · 안홍준 · 김희국 · 심학봉 · 문대성 · 류지영 의원 발의) 14
- 21.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 · 최동익 · 배기운 · 문병호 · 민홍철 · 전해철 · 홍종학 · 이한성 · 안홍준 · 유재중 의원 발의) 14
- 22.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14
- 2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14
- 24.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14
- 25.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4
- 26.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주 · 우윤근 · 김영환 · 최재성 · 김승남 · 박홍근 · 박완주 · 양승조 · 정호준 · 강기정 의원 발의) 14

2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14
28.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17
29.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 · 김성찬 · 김정록 · 강창일 · 민홍철 · 이한성 · 안홍준 · 이만우 · 강은희 · 주영순 의원 발의)	17
30.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17
31.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이완영 · 경대수 · 김상민 · 김성태 · 민홍철 · 박성효 · 서용교 · 이종훈 · 주영순 · 최봉홍 의원 발의)	17
3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7
3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7
3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17
3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19
3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19
37.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19
38.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강석호 · 이현승 · 이명수 · 이종진 · 함진규 · 홍문중 · 이이재 · 이노근 · 윤진식 · 김태흠 의원 발의)	19
39.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우 의원 대표발의)(이철우 · 이종진 · 김세연 · 권은희 · 김을동 · 조현룡 · 이노근 · 안효대 · 함진규 · 이명수 · 강석호 · 이장우 · 김기현 · 신의진 의원 발의)	19
40.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 · 유대운 · 김승남 · 김성곤 · 이윤석 · 민홍철 · 배기운 · 신장용 · 박기춘 · 정청래 의원 발의)	19
o 의사일정 추가상정의 건	21
4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21
o 5분자유발언	21

(19시16분 개의)

○의장 강창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습니다.

○의사국장 전상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6일 교섭단체 민주당 대표의원으로부터 교섭단체 명칭이 민주통합당에서 민주당으로 변경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김희선 의원 대표발의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 의원 대표발의로 녹색기후기금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145건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정부로부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강창희 한 가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으로부터 제8항까지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서가 아직 제출되지 않은 관계로 교섭단체대표의원들과의 협의에 따라 상정을 잠시 보류하였다가 심사보고서가 제출되는 대로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 경기도 여주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

10.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안(박성효 의원 대표발의)(박성효 · 김기선 · 유승우 · 박덕흠 · 金永柱 · 윤재옥 · 황영철 · 고희선 · 강기윤 · 이찬열 · 유대운 · 백재현 · 박남춘 의원 발의)

11.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

12.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

13.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

(19시19분)

○의장 강창희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여주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10항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안, 의사일정 제11항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전행정위원회 박성호 의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위원장대리 박성호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대전 대덕구 출신 박성호 의원입니다.

우리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여주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경기도 여주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여주군을 여주시로 승격시키는 법률안의 내용은 타당하다고 보았으나 여주군민의 날이 9월 23일인 점을 감안해서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에서 ‘2013년 9월 23일’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을 심사한 결과 기존의 지방분권,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보다 체계적인 지방분권, 체제개편을 추진하고자 하는 제정안의 내용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국가가 지방의회 및 집행기관의 구성 형태를 검토하도록 한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한 및 사무 이양을 위해 국회에게 필요한 법적 조치 마련을 노력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진선미 의원, 김태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사나 지방공단을 설립할 경우에는 미리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둘째 뇌물 수수 등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범위를 확대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안 등 7건의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비업체의 난립을 막기 위해 경비업의 허가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경비원의 폭력이 문제가 되는 노사분규·재개발 현장 등 집단민원 현장을 명확히 하여 법률에 규정을 하고, 집단민원 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할 경우 배치 48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관서장의 배치 허가를 받도록 하며, 경비업자와 경비원들의 불법적 행위에 대한 규제 및 처벌을 강화하는 등 현행법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정대 의원, 이진복 의원, 설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부마민주항쟁 관련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률 제정을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 심의 위원회를 설치하며, 위원회에서 관련자로 인정된 사람의 경우 보상금,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되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이미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동 제정법에 따른 보상 시 보상금 등을 차감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5건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강창희 그러면 먼저 경기도 여주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26인 중 찬성 226인으로서 경기도 여주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은

안전행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24인 중 찬성 212인, 반대 3인, 기권 9인으로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은 안전행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30인 중 찬성 229인, 기권 1인으로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29인 중 찬성 226인, 기권 3인으로서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29인 중 찬성 228인, 기권 1인으로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3년도 기술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
3. 2013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
4. 2013년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
5. 2013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6. 2013년도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7. 2013년도 무역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
8. 2013년도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19시32분)

○의장 강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마는 앞에서 상정을 보류한 의사일정 제1항에서부터 8항까지를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술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무역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윤석 위원장 나오셔서 8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長 張倫碩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홍원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윤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 차례의 예결위 전체회의, 다섯 차례의 소위원회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동안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한 소위원회 위원 전체가 참여한 수차례 협의 과정 등을 거쳐서 수정안을 마련하여 오늘 전체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출 확대 규모나 재원 배분 방향 등에 대하여 여야 간에 시각 차이가 있었지만 한정된 국가 재원이 투자 우선순위

에 따라 적정하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 위원 전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신속한 여야 합의에 진력하여 주신 민주당 최재성 간사님, 새누리당 김학용 간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모든 예결위원님들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경예산안이 서민 생활을 안정시키고 어려운 경제난을 회복하는 데 잘 쓰여지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감액 사업의 경우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존중원칙에 따라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은 원칙적으로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중액 사업의 경우에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은 국채를 통하여 조달되는 만큼 경제 회복, 민생 안정,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이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수정안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총지출 기준으로 5340억 원이 감액되고 5238억 원이 증액되어 102억 원이 순삭감되었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의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들 좌석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심사보고를 마지막으로 우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공식적인 활동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모쪼록 이번 국회를 통과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이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으로 작용하여 대한민국의 경제가 다시 한번 일어서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의 경륜과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 8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강창희 다음은 헌법 제57조 및 국가재정법 제69조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심사 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이나 새로이 설치된 비목에 대하여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입니다.

정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7개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정부 원안보다 증액된 부분과 새로운 비목 설치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병운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운 의원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통합진보당 광주 서구을 출신 오병운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한 추경 편성 요인 중 하나인 ‘경기 침체 등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에 해당합니까? 이번 추경은 정부와 여당의 면피성 추경예산, 서민 들러리 추경예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정부는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을 명분으로 17조 3000억 원의 대규모 추경 편성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번 추경안 편성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경제성장률을 너무 높게 책정하고, 세입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정부는 추경안을 내놓기 전에 사과부터 해야 합니다.

국무총리는 여야 의원들의 강력한 요구에 마치 못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답답한 정부의 태도를 보여 주었습니다. 잘못을 저질러도 반성하지 않는 정부의 모습입니다. 우리 국회가 거수기입니까?

새누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지적했던 많은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데 앞장섰습니다. 부풀린 경제성장률을 제시한 이명박정부도 문제지만 여당도 같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반성 없는 정부와 새누리당에게 깊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추경은 일자리 창출 등 민생 안정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뭐가 민생 안정입니까? 일자리를 찾고 있는 청년들에게 물어봤습니까? 아이들 등록금의 걱정에, 걱정에 찬소주로 쓰린 속을 채우는 아버지들에게 물어봤습

니까? 아니면 정규직의 반밖에 안 되는 월급에 늦은 시간까지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물어봤습니까?

정부는 민생 안정이라는 말을 쓰지 마십시오. 노동자, 농민, 서민 등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재벌들과 비싼 아파트 가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번 추경안입니다. 민생 안정이라는 말로 진실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재정건전성 강화를 통해 추경예산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고 국채 발행으로 예산을 마련하는 것이 어떻게 민생 안정입니까? 피해는 오롯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돌아가는데 어찌 민생 안정이라는 말입니까?

이번 추경안에 반대표를 행사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법안 심사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예결위에서 얼마 전, 불과 한 시간 전도 안 됩니다. 통과된 예산안을 저는 아직 받아 보지 못했습니다. 단말기를 찾아봐도 분석할 수가 없습니다. 이 상태로 표결을 해야 됩니다. 참담합니다. 다른 법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도 보완을 위해서 함께 지혜를 모으는 그런 국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 올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강창희 다음은 류성걸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걸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강창희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구 동구갑 출신의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찬성 토론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대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 2011년 2/4분기 이후 지금까지 8분기 연속해서 0%대의 전 분기 대비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경제 활력이 매우 중요한 그런 때입니다.

어려운 경기여건 속에서 민간의 소비와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때입니다. 이런 때에 불가피하게, 그리고 최선의 선택이 추가경정예산안이라는 점은 이미 여기 계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모두 다 인정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24일부터 금일까지 14일 동안 종합정책질의와 계수조정소위를 열심히, 그리고 심야까지 심사를 했습니다. 휴일도 사실 반납한 채로 여야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소위에서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이제까지 예산안 관련해서 여러 가지 쟁점이 있었지만 합의를 이뤘다는 점에서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에서는 추경예산안의 신속한 합의 처리와 재정건전성 제고의 일환으로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1%p 인하하고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서 재정건전성도 함께 마련해 가기로 합의문에 명기를 하였습니다.

금번 17조 300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는 사실 12조 원의 세입경정이 들어 있습니다. 잘못된 경기 전망과 성장률에 따른 결과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는 세입과 관련된 담당자들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세입실명제를 도입하는 등 정부 자체 내부에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에 보고할 것을 이 자리에서 제안하는 바입니다.

또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과 재정건전성 유지라는 정책목표 간에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서 다시는 금번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일자리 창출, 서민과 중소기업 지원 강화 그리고 지방경제 활성화를 포함한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에 그 원칙을 두고 국회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계획운용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이제는 국회가 한목소리로 힘을 모을 때입니다.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찬반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서민과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자금 경색과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수출기업을 위한 지원을 서둘러야 할 때입니다.

정부 정책은 타이밍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정부에 대해서도 철저한 준비를 촉구합니다. 국회에서 처리된 추가경정예산안이 직접적으로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서민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와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월별·분기별 집행실적을 점검해서 추경의 효과가 확실히 나타날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신속하고 그리고 원만하게 처리되어 그 효과가 감소되지 않도록 적극 찬성해주시기를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들께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창희 다음은 신학용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학용 의원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인천 계양갑 출신 신학용 의원입니다.

여야 예결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저 국회의원 한 사람으로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반대토론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처지, 의원님들 깊이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국회의원에게는 본회의에 수정안을 낼 권리가 있습니다. 수정안을 낼 수가 없어요. 지금 내용이 뭔지 모르고, 존경하는 오 의원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아무 내용도 모르고 지금 시작합니다.

제가 수정동의안을 옳고 그르든 간에 좀 내려고 노력했지만 23명밖에 못 받았습니다. 더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인장을 받으러, 날인을 받으러 각 의원사무실로 가야 될 그 시간조차 없게 지금 만들어 놓은, 우리 국회의원들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이 관행 좀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어떻게 간에 국회는 상임위 중심으로 열린다는 건 우리 모두의 바람이고 또 그렇게 해오기를 바랐을 겁니다. 특히 예산 문제에 있어서는 국회 상임위의 역할은 하나도 없습니다. 상임위에서 넘어가지 않으면 강제로 예결위로 넘어가고.

국회에서 가장 일을 잘 아는 곳이 상임위입니다. 상임위에서 모든 일을 잘 알기 때문에 예산 또한 상임위원들이 그야말로 머리를 짜내고, 지혜를 짜내고 해서 만듭니다.

전체 다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안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안 1505억 원 왔습니다. 교육에 너무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누리과정 지금 각 지자체 돈이 없어 가지고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신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처우 개선 정말 시급합니다.
초·중등학교 화장실 개선비, 아직도 재래식 화장실을 쓰는 학교가, 초등학교가 엄청납니다. 물론 많이 신청했습니다, 5500억 원. 그렇지만 다 달라는 것 아닙니다. 일부는 내놓으면 내년에 확실히 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시끄러워요!」 하는 의원 있음)
시끄러워요?

학교폭력 없애라 없애라 그렇게 하면서, 지금 CCTV 고화질로 좀 확충해라, 그 예산 넣었어요. 또 인천대 이야기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국립대 법인화 만들었습니다. 국가시책에 의해서 2009년도에 인천전문대, 인천대학교를 합병시켰습니다. 관례대로 몇 배, 거기에 합병을 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데 한 푼도 지원 안 했습니다.

학교가 지금 모자라요. 국가시책에 따라 가지고 8000명을 1만 2500명 수용하니까 강의실이 부족해요. 작년에 그렇게 달라 달라 해도 그것 하나 안 주고 있어요.

그리고 예결위에서 50억 그것이라도 좋다, 해주기로 했는데 예산안 프린트 들어갔다, 이제 할 수 없다, 부대의견으로 추경 때 주겠다 해 놓고…… 이번 추경에 그것 달라 그랬어요. 그것도 안 줘요.

자, 우리 교문위, 창피해서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1505억 추경예산안 들어왔어요. 오죽했으면 306억 원을 깎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죄송합니다마는 6800억 증액했어요. 그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누리과정 국고지원, 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 초·중등학교 재래식 화장실 고쳐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CCTV 확충, 학교폭력 때문에 특위도 만들고 온갖 짓 다 해 놓고는 예산 좀 달라니까……

거기다가 제가 말했지만 인천대 예산, 국가시책에 의해서 2009년도에 합병시킨 것만 해도 큰데 돈 하나 안 주고 학교 강의실이 부족해서 하나 지어 달라, 작년에 해 주기로 해 놓고 못 했

어요. 추진해 주기로 했으면 해야지. 상임위를, 그래 놓고는……

(「이제 내려와요」 하는 의원 있음)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김정훈 의원!

1505억 원에서 306억을 삭감했습니다, 20%. 우리 국회에, 상임위에 그런 권한을 준 것은 확실히 하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추경이 많지만, 증액을 많이 시켰지만 그래도 우리가 신청한 것을 조금이라도 해 주어야지 삭감한 것도 다 삭감시키고, 우리가 증액한 것도 다 삭감시키면 이게 어느 상임위에서 국회 본연의 자세로 깎으려고 그러니까?

그 예산 어디로 갔느냐? 또 다른 데 갔어요. 이게 뭐니까, 국회인가? 그러면 상임위랑 다시 논의해야지요. 정말 화가 납니다.

상임위 중심 국회 하기로 해 놓고는 상임위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상임위보다 더 잘 아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보다 더 잘 예결 위원들이 압니까? 알면 나오세요!

지금 수정동의안 의원님들한테 정말 읍소하면서 수정동의를 하려도 시간이 없어요, 지금 시간이. 이렇게 우리 국회의 권위를 우리 스스로 무너뜨리면서 이런 지경에 오른 이 추경예산안 반대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말 한번 부결시켜 봅시다!

우리 국회 권위를 위해서도, 상임위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상임위원장한테 의논이라도 한 마디 해야지. 교문위의 예결위원장들 밤잠 못 자면서 그렇게 해 놓은 것을 하루아침에 다 없애버려? 이게 무슨 국회입니까? 정말 창피해 죽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권한을, 권리를 우리 자신이 깎고 있는 한심한 이 처사를 보고, 그 돈 깎은 것 어디 갔습니까, 예? 지금 내용도 몰라요, 나는.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의장 강창희 자, 신학용 의원, 이제 마쳐 주세요.

○신학용 의원 한번 부결시켜서 본때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창희 다음은 박원석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석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신학용 의원님께서 열정적인 토론을 해 주셨기 때문에 동어 반복이 되겠습니다마는, 앞서도 지적이 있으셨듯이 이번 추경 예산은 국회가 가진 예산 심의권이라는 중요한 권능을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그런 결정이기에 다시 한번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이번 추경의 대부분은 정부의 영터리 경기 예측에 의한 세입 결손분을 메우기 위한 예산입니다. 올해 예산안이 확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4%였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3%로 거의 절반 수준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이로 인해 12조 원의 세입예산이 구멍이 났는데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적자 국채로 메우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추경안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추경 편성 전에 정부가 응분의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번 추경안은 추경 편성의 법적 근거 또한 부족합니다. 현행 국가재정법 89조에는 경기침체 등 국내외 중대한 여건 변화가 발생했을 때만 추경을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5%에서 3% 내외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 정도 수준의 경기전망을 두고 경기침체 또는 중대한 여건 변화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밀어붙이 다시 추경 편성을 강행하는 것은 세입 결손을 메우기 위한 추경의 본래 목적으로 조금이나마 희석시키고 정권 출범 초기에 빚잔치를 해서라도 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정치적 목적에 다름 아닙니다.

이런 정치적 목적의 추경 편성이 전례가 되면 향후에도 관례적으로 이런 방식의 추경이 되풀이될 수 있고, 그 결과는 나라살림의 부실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경제 활성화, 민생 안정, 일자리 창출을 추경 편성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내용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의 결과를 보면 K-9 자주포와 같은 무기 도입 예산이 수백억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무상보육이나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예산은 거의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지방자치단체의 심각한 재정난으로 중단 위기에 처해 있는 영·유아보육 예산은 한 푼도 증액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K-9 자주포 예산이 민생 안정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서민들이 가장 바라는 보육예산은 한 푼도 증액하지 않은 예산을 어떻게 민생 예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그나마 정부가 제출한 추경 원안에 포함된 일자리예산 중 사회공헌일자리 지원, 글로벌 취업 지원,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은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186억 전액이 삭감됐습니다. 이번 추경안이 처음부터 얼마나 졸속으로 만들어졌는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만약 이런 예산을 민생예산의 이름으로 통과시키는 순간 이는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국회 스스로 훼손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서 가슴기 피해자 국민에 대한 대책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도 대단히 유감입니다.

국회에서는 지난 4월 29일 본회의를 통해서 가슴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이 결의안에 따라서 소관 상임위원 환노위에서는 피해자 구제대책을 위해 50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무려 111명의 국민이 죽음을 맞이한 비극적인 사건이고 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환경재난 사건인 만큼 결의안 통과와 관련 예산의 반영은 너무나 당연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최종 추경안에는 환노위에서 증액한 50억 원 전액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결의안에는 분명히 정부로 하여금 피해자 구제 방안과 관련 예산 집행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고, 국가재정법 89조에 따르면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에는 추경편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결의안은 법률안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가슴기 피해자 구제대책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 만들어 놓은 예산 증액안을 전액 삭감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추경안은 한마디로 무책임한 추경이고 반민생 추경이며 국민 빚더미 추경에 다름 아닙니다. 아무쪼록 정부의 무책임한 추경편성에 경종을 울리고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스스로 지켜 나가는 것은 물론 서민 실생활에 필요한 진짜 추경안을 다시 마련할 수 있도록 부결시켜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서 국회의 정상적이고 공개적인 논의 절차를 거치기보다는 양당 간의 정치적인 합의라는

방식으로 국정의 중대 현안을 결정하는 잘못된 관행은 이제 그만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창희 그러면 마지막으로 최재성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성 의원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 남양주갑 출신 예결위 간사 최재성 의원입니다.

이번 추경은 출발 자체가 기형적인 절름발이 추경이었습니다. 엉터리 추경이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여야를 넘어서 지적했다시피 세입결손을 보전하는 추경입니다. 그래서 외형은 17조가 넘는 추경이지만 실제로 외상값 갚고 나면 쓸 수 있는 것이 3조 7000억 되는 그런 추경입니다. 선물상자를 받아 봤더니 부피는 엄청나게 큰데 그 안을 들여다봤더니 뺨튀기 과자 하나 있는 그런 추경입니다. 그래서 애당초 이런 추경은 올바른 지 않고 책임은 정부에 있었던 것입니다.

올 예산을 편성했던 정부가 세외수입도 거짓 부풀리기를 했고 또 세수도 성장률을 모두가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나 홀로 높은 성장률을 잡아서 세수결손을 초래했기 때문에 이미 지출이 잡혀 있어서 그 지출에 필요한 세수결손분을 메우는 그 액수가 12조 원에 달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국회는 이렇게 제출한 추경을 하지 말 것인가? 잘못된 추경이지만 3조 7000억이라도 풀어서 경기에 대응하고 민생에 대응하는 그런 추경을 아니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정상적이고 옳지 않은 추경이었지만 그래도 3조 7000억이라도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추경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 면만을 보고 판단할 수 없다 이것이 본 의원의 주장입니다.

민주당은 야당답지 않게 전통적 주장을 접고 재정건전성 대책을 요구했고 고맙게도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받아 주시고 또 정부도 협조를 해서 고용투자세액 기본공제율을 낮춰서 2000억 원 이상의 세수를 늘릴 수 있는 대책을 합의해서 마련했습니다. 15조 8000억의 빚을 지는 이번 추경의 대응책으로는 충분치는 않지만 소중한 합의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당의 활동이 돋보인 점이 이 점이라고 자부를 합니다.

세출을 늘려야 된다는 주장을 봉쇄했습니다.

‘세출을 2조 늘리자, 3조 늘리자’는 주장이 있었 습니다만 세출을 늘리는 것은 국채 발행을 늘리 는 것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세출을 늘리 는 것을 봉쇄해야겠다는 여야의 컨센서스가 있었 고 그렇게 결과가 났습니다.

서민과 중소기업 대책에 대해서도 야당이지만 끊임없이 요구를 해서 1600억에 달하는 추경안 외의 증액을 야당이 주장을 했고, 그것을 여당이 받아주고 합의 처리했습니다.

중소기업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정부안보다 1000 억을 더 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정부안보다 500억을 더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경제 위 기에 대응하고 또 서민과 중산층 예산을 확보한 전형적인 사례라고 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잘못된 추경이기 때문에 한계 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3조 7000억을 어떻게 쓸 것이냐의 문제가 매우 제한적이었던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문제도 충분히 심도 있게 토론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천대의 경우도 충분히 지원을 해야 될 당위성과 현실성이 뒷받침 되는 그런 학 교 현장입니다. 강의실이 부족합니다. 아우성입니 다. 그래서 현금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도리 이고 그것이 국회가 해야 될 마땅한 도리이지만 법률적으로, 규정에 의해서 2017년 이후에야 지 원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자보전을 해 주는 전제로 예산안, 이자보전에 해당하는 예산안을 이번에 잡았던 것입니다. 부 족하지만 이런 점들이 인천대에 위로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존경하는 박원석 의원께서 말씀하신 일자리 문 제도 민주당이 끊임없이 얘기했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임시성, 직접 일자리의 과잉에 대해서 지적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야당의 주장 이었습니다.

언급하신 3개의 일자리는 최종하지만, 사회공 현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중산층 이상의 퇴직자들 의 또 다른 활로를…… 또 다른 일자리다 이런 측면에서 서민을 위한 일자리하고는 거리가 멀다 는 그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야당도 수용했던 것입니다.

하나하나 설명드리면 다 근거가 있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총리가 사과를 했습니다. 잘못된 추경입니다. 총리도 사과하고 잘못을 인정했고, 제출된 추경 안을 심사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도리가 아니라 고 봅니다. 한계는 있었지만 여야가 머리를 맞대 고 간사에게 위임하지 않고 모든 소위 위원들이 한 항목씩 꼼꼼하게 살펴서 만든 합의안이 이번 추경안입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부디 헤아리서 서 부족하고 어려운 점이 많았지만 합의정신이 돋보이고 또 면밀한 심사를 했던 아주 유례없는 심사였고, 야당 또한 그 필요성과 존재감을 충분히 정책적으로 제기하고 성공한 그런 추경 심사 였던 점을 헤아리셔서 투표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강창희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 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6인 중 찬성 130인, 반대 69인, 기권 27 인으로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 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13년도 기술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 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마치셨습니까?

투표를 종결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3인 중 찬성 166인, 반대 20인, 기권 37 인으로서 2013년도 기술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 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 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13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21인 중 찬성 165인, 반대 20인, 기권 36인으로서 2013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13년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21인, 찬성 164인, 반대 18인, 기권 39인으로서 2013년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13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23인 중 찬성 159인, 반대 31인, 기권 33인으로서 2013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13년도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23인 중 찬성 180인, 반대 13인, 기권 30인으로서 2013년도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13년도 무역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22인 중 찬성 175인, 반대 18인, 기권 29인으로서 2013년도 무역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13년도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21인, 찬성 166인, 반대 21인, 기권 34인으로서 2013년도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그동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느라고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회가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이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즈음한 정부 측 인사가 있겠습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정부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추경예산안 심의에 애써 주신 장운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예결위원 여러분 계도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정부는 오늘 의결해 주신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속하고도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여 경기 침체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층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소 수출기업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기 활력 회복을 위한 예산도 차질 없이 집행하여 어려운 경제 상황을 조속히 극복하고, 성장잠재력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은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온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 나가야 할 때입니다. 정부부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이 민생경제 안정과 경기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한편 강력한 재정지출 구조 개혁과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도 향후 국정 수행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창희 총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상정을 보류했던 의사일정 제14항부터 17항까지 상정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박덕흠·김세연·유일호·안홍준·한선교·김용태·신동우·윤상현·이우현·정두언·송광호·李宰榮·박대출·김동완·이노근·주영순·정우택·박창식 의원 발의)

15.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홍문표·김영록·노철래·김춘진·정문헌·김우남·김태환·유성엽·윤명희·강석호·주영순·정희수·하태경 의원 발의)

16. 농림수산물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7.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20시22분)

○의장 강창희 의사일정 제14항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5항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6항 농림수산물과학기술 육성법 일

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7항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홍문표 의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대리 홍문표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충남 예산·홍성 출신 농림수산물과학기술육성법 소속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일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박덕흠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매년 농업인의 질환 현황을 조사하여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고, 고령농업인의 소득 안정화를 위한 지원정책 마련 및 농어촌지역의 석면 제거·처리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시와 농어촌 간에 소통 여건을 조성하고 상호 교류를 정착시켜 농어민에게 소득을 증대시키고 문화와 역사를 교류하여 범국민적 농어촌과 도시가 하나 되는 날을 지정하자는 뜻에서 매년 7월 7일을 '도농교류의 날'로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농림수산물과학기술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연구개발사업의 협약대상에서 연구개발서비스업자를 추가하고 기술인증제를 도입하는 한편, 우수 기술의 사업제품화를 위한 자금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명 농기계 임대법이라고도 합니다.

(강창희 의장, 박병석 부의장과 사회교대)

현재 농기계는 농사짓는 데 반드시 필요한 농기계이지만 우리 농업인들의 부채 중 40%가 농기계 구입에 따른 부채이므로 농기계의 임대 등을 통하여 농민들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하고 농촌의 인력난을 완화하는 등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기계화 정책심의위

원회를 설치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자는 여성농업인, 장애인, 가족농업인, 소농농업인에게 우선 임대할 수 있게 하며 중고농업기계유통센터의 설치·운영의 주체를 국가 등에서 민간 부문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거나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4건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박병석 그러면 먼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04인 중 찬성 203인, 기권 1인으로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09인 중 찬성 202인, 기권 7인으로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농림수산물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07인 중 찬성 202인, 기권 5인으로서 농

림수산물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08인 중 찬성 205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1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20.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림 의원 대표발의)(문정림·이인제·이낙연·김정록·홍지만·이명수·이자스민·金永柱·안홍준·김희국·심학봉·문대성·류지영 의원 발의)

21.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최동익·배기운·문병호·민홍철·전해철·홍중학·이한성·안홍준·유재중 의원 발의)

22.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2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24.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25.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6.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주·우윤근·김영환·최재성·김승남·박홍근·박완주·양승조·정호준·강기정 의원 발의)

2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20시31분)

○부의장 박병석 의사일정 제18항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9항 노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0항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1항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2항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3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4항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5항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6항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7항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10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문정림 의원 나오셔서 10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장대리 문정림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입니다.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10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의 시기를 정부의 예산편성 시기와 연계하고 임의계속가입 신청기간을 연장하며 명의를 대여하여 요양기관을 개설한 이른바 사무장병원의 사무장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의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다음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을 노인복지시설의 한 종류로 규정하여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대상에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은 화재 외의 안전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 시설의 운영자에게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아동의 범위를 실종 당시 만 1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고 치매환자도 연령 구분 없이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를 그 처분이 확정된 의료급여기관을 양수한 자 등에게 승계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효과적인 응급이송 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구급차 운용신고를 의무화하고 외상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은 의료기사 등의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게 그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응시자격 제한을 차등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제한기간의 상한을 상향 조정하는 것 등입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활동 지원급여와 관련한 부양의무자 정의 규정에서 수급자의 배우자가 부양의무자임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기존의 보육정보센터에 가정양육 기능을 추가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하고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 및 비용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시고 우리 보건복지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0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박병석 그러면 먼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04인 중 찬성 204인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7인 중 찬성 207인으로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9인 중 찬성 208인, 기권 1인으로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9인 중 찬성 208인, 기권 1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209인, 기권 1인으로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9인 중 찬성 207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배재정 의원님, 투표하셨어요?
(○배재정 의원 의석에서 — 예.)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2인 중 찬성 210인, 기권 2인으로서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9인 중 찬성 208인, 기권 1인으로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9인 중 찬성 208인, 기권 1인으로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11인 중 찬성 209인, 기권 2인으로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8.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제출)

29.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 · 김성찬 · 김정록 · 강창일 · 민홍철 · 이한성 · 안홍준 · 이만우 · 강은희 · 주영순 의원 발의)

30.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31.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이완영 · 경대수 · 김상민 · 김성태 · 민홍철 · 박성호 · 서용교 · 이종훈 · 주영순 · 최봉홍 의원 발의)

3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20시45분)

○부의장 박병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9항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0항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1항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32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3항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4항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김경협 의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노동위원장대리 김경협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부천 원미갑 출신의 민주당 김경협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

먼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법률의 제명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수정하고, 둘째 화학사고를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미신고 시 처벌을 강화하였으며, 셋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맞추어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의 체계를 수정하였으며, 넷째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 제도를 도입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화학사고 방지 및 대응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이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공기와 선박 등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대중교통차량의 소유자 등에게 교육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및 임시보관장소의 처리·승인기준 및 허가취소 요건을 강화하고, 둘째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기준을 명확히 하고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 보증보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였으며, 셋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용도별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이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생태 관련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직원 채용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과도한 혜택을 부여하던 특례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와 근로자를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하여 65세 이후에 자영업을 개시한 자에게도 실업급여 보험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65세 이후 폐업한 자영업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실업급여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 전에 이직한 근로자나 폐업한 자영업자에게도 개정 규정을 적용하도록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유해·위험 화학

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설비 등을 수리·개조하는 등의 작업을 도급할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해당 작업에 대한 유해성·위험성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둘째 건설공사 과정에서 재해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설계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7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박병석 그러면 먼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04인 중 찬성 194인, 반대 3인, 기권 7인으로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02인 중 찬성 200인, 기권 2인으로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04인 중 찬성 202인, 기권 2인으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04인 중 찬성 202인, 기권 2인으로서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04인 중 찬성 203인, 기권 1인으로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03인 중 찬성 202인, 기권 1인으로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6인 중 찬성 205인, 기권 1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3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37.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38.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강석호 · 이현승 · 이명수 · 이종진 · 함진규 · 홍문중 · 이이재 · 이노근 · 윤진식 · 김태흠 의원 발의)

39.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우 의원 대표발의)(이철우 · 이종진 · 김세연 · 권은희 · 김을동 · 조현룡 · 이노근 · 안효대 · 함진규 · 이명수 · 강석호 · 이장우 · 김기현 · 신의진 의원 발의)

40.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 · 유대운 · 김승남 · 김성곤 · 이윤석 · 민홍철 · 배기운 · 신장용 · 박기춘 · 정청래 의원 발의)

(20시57분)

○부의장 박병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6항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7항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8항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9항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0항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강석호 의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위원장대리 강석호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7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일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노근 의원안, 한기호 의원안, 정부안을 통합 조정,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 첫째 국가계획과 관련 있는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주요 국가안보시설의 경우에는 비밀 누설을 방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을 생략할 수 있으며, 둘째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던 건축물 등을 기존 부지 안에서 증축하는 때에는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의 부과율을 완화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정희수 의원안 2건, 김태원 의원안, 이재영 의원안, 이이재 의원안, 정부안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 그 내용은 단말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노근 의원안 2건, 이철우 의원안, 정부안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 주택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 기준에 건축물의 내진 성능 확보를 위한 비용을 포함,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도 용적률 완화 등, 그 내용은 단말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희국 의원안, 안효대 의원안, 박수현 의원안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단말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동산투자회사가 총자산을 주택 임대사업에 투자하는 경우 주식 공모 의무와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면제하려는 것으로, 그 내용은 단말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부동산 광고를 실명화하고, 공인중개사 협회의 공제사업에 대하여 운영위원회를 설립하는 등 현행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승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유수면 매립면허권 양도·양수 가액 산정 시 개발로 인한 지가변동 요인을 배제하고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매립면허 양수가액만큼 토지 취득을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매립완료 후 토지 취득 시 매립면허권 양수가액을 포함시키는 특례를 매립면허권 양도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인 경우로 한정하는 등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참고로 법제사범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매립면허권 양수가액만큼 토지 취득을 허용하도록 하는 개정 규정을 이 법 시행 당시 기업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특례가 신설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6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박병석 지금 강석호 의원께서 심사보고하신 제37항은 교섭단체 협의에 따라서 상정 보류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98인 중 찬성 180인, 반대 5인, 기권 13인으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조금 전 상정 보류된 법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99인 중 찬성 189인, 반대 2인, 기권 8인으로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02인 중 찬성 198인, 기권 4인으로서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02인 중 찬성 183인, 반대 6인, 기권 13인으로서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02인 중 찬성 197인, 기권 5인으로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03인 중 찬성 179인, 기권 24인으로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추가상정의 건

(21시07분)

○**부의장 박병석** 한 가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교섭단체대표의원 간 합의에 따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 의사일정 제41항으로 추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21시08분)

○**부의장 박병석** 의사일정 제41항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회의 이철우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운영위원장대리 이철우**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 이철우 의원입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국가재정법을 개정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로 되어 있는 예산안의 국회 제출시기를 앞당기면서 그 시행시기를 2014년으로 한 것과 맞추어 국회법상 예산안의 본회의 자동부의 규정의 시행일을 2014년 5월 30일로 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정 내용은 2012년 5월 국회법을 개정하면서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 규정의 시행일이 예산안의 국회 제출시기를 앞당기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 시행일과 연계되도록 한 부대의견을 채택한 데 따른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회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박병석** 그러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7인 중 찬성 190인, 반대 4인, 기권 3인

으로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5분자유발언

(21시11분)

○**부의장 박병석**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 강길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부 의원**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울산 울주 출신 강길부 의원입니다.

오늘 자유발언을 하게 된 것은 반구대 암각화 보존대책의 시급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995년 국보 285호로 지정된 반구대 암각화는 6000년 전, 선사시대 우리 선조의 사회 체계를 담은 그림으로 그려진 역사책임입니다. 특히 선사시대 배를 타고 고래를 잡는 풍경 장면이 새겨진 암각화는 지구상에서 거의 유일하다고 평가받고 있어 고고학적 가치는 물론 미술사 연구와 정신문화 연구에 있어 세계적인 문화유산입니다.

그러나 1971년 발견 당시부터 사연담에 의하여 이미 수몰된 상태였고, 24년이 지난 1995년 비로서 국보로 지정을 하였지만 국보 지정 이후 지금까지 18년간이나, 발견 당시부터로 치면 42년간이나 연중 6~8개월을 물속에 잠기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침수와 노출의 반복으로 인해 반구대 암각화의 약 23.8%가 훼손되었다는 연구도 있고, 가까운 장래에 송두리째 붕괴될 수 있다는 경고도 있습니다. 송례문과 같은 건축물의 경우는 복구할 수도 있지만 반구대 암각화는 단 한 차례의 붕괴로 영원히 재생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선사문화 역사를 6000년 전으로 되돌리는 민족사적 유물을 42년간이나 물고문을 하면서 어떻게 문화 강국을 주장할 수 있다 말입니까?

지난 몇 년간 김형오 전 국회의장, 한승수 전 국무총리, 김황식 전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관련 부처 장관 등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 왔지만 지금까지 그 보존대책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시민들의 소중한 식수원과 반구대 암각화를 동시에 보존하기 위하여 생태제방안을 주장하고 있고, 문화재청은 원형 보존을 통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려면 사연담 수위를 낮추는 수문 설치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논란이 약 10년간이나 계속되고 있는 사이 반구대 암각화는 계속 물에 잠겨 훼손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소모적 논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올해 내에는 반드시 그 해결책에 대하여 합의를 보고 물에서 건져 내어야 합니다.

다행히 박근혜 대통령께서 반구대 암각화에 대한 합리적이고 근본적인 보존대책을 마련하여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겠다는 것을 대선 공약으로 말씀하신 후 그 어느 때보다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님을 비롯한 최고위원 회의를 반구대 암각화 박물관에서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여기 국무총리와 문광부장관께서 나와 계십니다만 정부는 올해 내에 반드시 반구대 암각화 보존대책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해 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먼저 새누리당과 울산시가 제안한 임시제방안이나 생태제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그것이 반구대 암각화를 보존하기에 더욱 적합한 안이라면 당장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그것이 객관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한다면 지난 2010년경 한승수 전 총리가 중재하고 조정하여 국토부 고시까지 하였던 울산권 맑은 물 공급 사업의 재추진을 통해 수위 조절안을 울산시와 합의해야 합니다.

정부가 의지만 가진다면 올해 내에 수위 조절을 위한 수문설치 예산과 울산권 맑은 물 공급 사업 예산을 함께 책정해서 설계와 공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국보 285호 반구대 암각화 보존대책이 올해 반드시 수립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병석** 다음은 민주당 강기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정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의장님 여러분!

광주 출신 망월동을 지역구로 둔 강기정 의원

입니다.

이 정부가 5·18 기념식장에서 노래를 못 부르게 한다 그래서 광주가 참 혼란스럽고 또 분노하고 있습니다.

1982년 2월 겨울 그 광주의 망월동에는요, 한쌍의 영혼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신랑은 80년 5월 27일 날 시민군 대변인을 하다 총에 맞아 숨진 윤상원 열사이고요. 신부는 그로부터 2년 전에 들풀야학이라는 야학을 하다가 연탄가스에 숨진 박기순이라는 대학생이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두 사람의 영혼결혼식이 82년 2월 겨울 어느 날 있었는데 그 영혼결혼식을 기리는 노래가 불려졌습니다. 그 노래가 지금 화면에 떠 있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라는 노래입니다.

그 노래 한번 제가 불러 볼 테니까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간 데 없고 깃발만 나부껴
새 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이런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요, 당시에 5·18 때 많은 주변에 광주시민과 많은 사람이 죽어 갈 때 그 죽음에 대한 살아 있는 사람이 미안해서 정말 불렀던, 혼자 있거나 기쁘거나 슬프거나 민주주의 현장이거나 집에서나 막 불렀던 이런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가 정말 오래되었던 노래이기도 하고 그래서 97년, 1997년 5·18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되어서 정부 주관으로 첫 기념식 할 때도 불려졌고, 그다음에 2002년 국립묘지로 5·18 묘지가 승격되었을 때도 불려졌고, 그냥 그렇게 불렀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고 또 정부든, 노무현 대통령도 같이 불렀던 노래이기도 하고요, 대통령 시절에.

그런데 2009년 이명박정부 때 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빼고 ‘방아타령’을 부르라고 했다가 참야단이 났지요, 그래서 그것 포기했는데 또 박근혜정부에서는 4800만 원을 들여서 새로운 무슨 기념곡을 또 만들겠다 그래서 지금 야단이 났습니다.

최근에 보훈처에서는 서울시에서 5·18민주화 운동을 기리는 서울청소년대회에서 뽑힌 어린이 학생의 그림마저 검열하고 그 1등 당선작을 마음에 안 드니까 바꾸겠다 이런 또 참, 이것을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패륜적 행위라고 표현했는데요, 그런 행위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5·18 흔적을 지우겠다 이런 것 같습니다.

저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동의할 수 없다 싶습니다.

이렇게 5·18 정신을 계속 능멸하고 지우고 이런다면 제가 박근혜정부를 우리 정부라고 부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 조금 전에…… 이것은 그냥 노래가 아니라 그냥 우리 역사이고 혼입니다, 그냥. 이것이 뭐……

며칠 뒤면 33주년 5·18 기념식이 열리는데요. 제가 지난 3일 날 급하게 권여섯 분의 우리 의원님들의 서명을 받아서 이 노래를 그 기념식장에서 부르도록 해 주라 또 이 노래를, 돈 들어서 따로 만들지 말고 이것을 기념곡으로 하자 이런 결의안을 내놓았습니다.

참, 제가 오늘 이 노래를 부르면서 본회의장에서 노래 부르는 것까지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고 결의안을 내야 되는가 하는 참 부끄럽고 슬픈 상황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이번 33주년에 망월동 꼭 오셔서 함께 노래도 부르고 광주의 정신도 이어가고 국민통합도 이루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병석** 강기정 의원님 절절한 호소를 잘 들었습니다만 5분자유발언은 발언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철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조명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북한의 인권유린 상황이 날로 더해지고 있고 북한 인권 구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한민국 국회가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은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과 5·18, 6월 항쟁 등 민주화운동을 통해 조국의

민주개혁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해 왔습니다.

우리 국민은 민주화와 인권 투쟁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억압과 폭정에 의한 통치는 국민의 저항을 불러온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화 실현에 영혼과 육신을 다 바쳤던 투사들이 아직도 살아 있고 그 정신과 경험이 엄연히 살아 있는데 정작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침묵과 정적만이 흐르고 있습니다.

인권과 자유는 생명과 바꿀 만큼 소중한 가치입니다. 민주이념은 국민주권의 기초가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이 쟁취하고 발전시켰고 계승되어 오는 민주인권이념은 북한에서도 실현되어야 합니다.

우리 과업은 우리만의 민주화가 아니라 한반도의 민주화 완성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한반도의 북쪽에는 실현되지 못하는 참혹한 현실을 우리는 직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북한의 인권유린은 세계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지경입니다. 국민은 유례없는 경제적 결핍 상태에 있는데 핵과 미사일이 개발되는 곳이 바로 북한입니다. 주민은 굶주리고 있는데 대한민국 최종 파괴, 핵 선제 타격을 운운하는 등 전쟁 고취가 공공연히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북한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70여 년이 되어 오고 있는데 아직도 독일 나치가 운영하던 그런 수용소가 있는 곳이 바로 북한입니다. 그곳에 죄 아닌 죄로 끌려간 20만 명의 무고한 생명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북한 주민만큼 아무런 권리도 없이 살아가는 주민이 없을 정도입니다.

최근 개성공단 중단사태와 같은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행태도 북한발 인권유린의 대표적 현상일 뿐입니다.

개성공단에 근무한 5만 명의 근로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에 대한 안위보다도, 남북한이 합의한 투자보장합의서 준수보다도 자신들의 최고 존엄을 우선시하는 북한 당국의 행태에는 국민 위에 군림한 자들의 오만한 인권유린 의식이 깔려 있습니다. 현재 북한의 정책결정 우선순위에 북한 주민이란 없습니다. 오직 최고 존엄에 대한 맹신과 추종 강요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남북평화통일과 민족애·동포애·형제애를 관념론적으로 이야기할 때 북한주민들은 죽음보다 못한 고통을 인내하며 살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 국회는 북한 주민 앞에서 자기 본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북한인권법안이 8년째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우리를 한없이 부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도 우리가 나서지 않으니 전 세계가 먼저 나서서 북한인권법을 제정하고 북한 인권 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산업화·민주화·세계화·정보화를 개도국 중에서 가장 빨리 모범적으로 실현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자유국가 중에서 북한 인권을 외면하는 유일한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평양에서 TV를 통해 보면서 공경했던 민주·인권 투사들은 지금 다 어디에 가고 북한 폭압정권 앞에 굴욕적인 협력만을 외치는 세력만이 난무한단 말입니까? 과거 대한민국의 민주화에 공헌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지금 어떤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까? 독재와 폭압에 신음하는 북한 주민들을 외면하고 북한 독재정권의 눈치를 살피면서 가식적인 평화와 교류협력만을 외치는 것이 오늘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입에서 과거 민주화운동 시절에 터져 나왔던 독재 타도, 민주 정의, 인권 실현 등의 소리가 북한을 향해 터져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인권유린을 낳는 독재정치는 반드시 통치재원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의 평화적이고 통일 지향적이며 미래 지향적인 교류·협력, 인도적 지원이 인권유린을 위한 통치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돌아볼 때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통일의 그날 북한주민들이 내릴 준엄한 심판 앞에서 우리 모두가 떳떳하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민주화 시절에 외쳤던 독재타도를 북한정권을 향해 거침없이 외쳐야 할 때입니다.

여야 정치권이 일치단결해서 북한주민의 인권구원을 위한 확고한 의지와 해안을 모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병석 다음은 민주당 남인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인순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박병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여러분!

민주당 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윤인순 의원입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이 자리를 지켜 주시는 의원님들 존경합니다.

저는 오늘 국민연금의 국가지급 보장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무산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만든 제도가 국민연금제도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연금 재정 재계산이 이루어질 때마다 기금 고갈을 이유로 국민연금 급여율을 낮추었고 그 결과 국민들은 연기금이 고갈되어 자신이 낸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을까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경련 실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0.8%가 기금 고갈로 노후에 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지난 4월 KBS 여론조사 결과 노후에 지금보다 줄어든 연금을 받거나 아예 못 받을 것이라는 응답이 83.5%가 되는 등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정부가 국민에게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심어 주기는커녕 불신을 조장해서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저와 김성주 의원, 김재원 의원이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의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고 이 법안은 정부 여당의 협의, 여야 합의를 거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지위를 통과한 법안을 기재부가 국민연금 지급보장을 법률에 보장하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유일하고, 지급보장을 명시할 경우 국가부채로 계상되어 국가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이유로 반대하였고, 그 결과 오늘 법사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기재부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독일과 일본 등 연금지급 보장을 법률에 명시한 나라가 적지 않습니다.

또한 기재부는 국가지급 보장을 국민연금법에 명시할 경우 국제통화기금 기준 국가부채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IMF 정부재정 통계편람에서는 사회보험제도는 기여와 급여 사이에 엄밀한 관계가 존

재하지 않고 정책에 따라 급여구조가 변경될 수 있으며 정부에 대해 계약상의 의무를 초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회보장급여를 국가부채로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도 국민연금을 연금충당부채로 인식하는 사례가 없는 등 전 세계적으로 국민연금과 같이 전 국민에게 적용되는 사회보장급여를 국가부채에 포함시키는 나라는 없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도 2010년 8월과 10월, 2012년 6월 세 차례에 걸쳐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국민연금 미적립부채 등은 우발적·미확정 채무로서 국가채무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연금은 금융권에서 운용하는 개인연금이나 연금저축과는 달리 국가가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될 경우에 정부에서 연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연금제도가 성숙한 외국에서도 이미 연기금이 고갈된 국가가 많고 매년 국가에서 조세로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국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국가 지급 보장을 명기함으로써 국민의 불안을 해소해야 합니다.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는 이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법사위원회와 동료 의원들이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병석** 다음은 새누리당 김을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을동 의원**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누리당 송파병 출신 김을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매우 무겁고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2월 일본 자민당의 총선 압승 이후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연일 군국주의 부활을 노골화하는 등 일본의 우경화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독도 도발 야욕, 교과서 왜곡, 일본 부총리를 포함한 각료들과 역대 최대 규모의 국회의원들이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으며, 전쟁포기를 선언한 평화헌법 개정 야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 시도와 야스쿠니신사 참배,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침탈 야욕은 잘못된 군국주의 망령의 부활로 우리 국민은 더 이상 일본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역사 이래 일본으로부터 수백 번의 침탈을 당해 왔으며, 불과 100년 전에는 나라 전체를 강탈당하고 민족이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습니다. 기본권을 박탈당하고 위안부 강제동원과 강제징병·징용에 우리의 오롯한 역사·언어·문화까지도 말살당하는 탄압을 받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약탈당했던 찬란하고 소중한 우리의 문화재들이 여전히 일본을 비롯한 타국을 떠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존립의 근간이 되는 역사교육과 국민의 역사의식은 뒷걸음치고 있어서 안타까움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일본의 우경화에 맞서 우리 정부의 조용한 외교는 더 이상 국민들의 공감을 살 수 없습니다. 일본은 올해 85억 원의 예산을 책정하여 자국의 해외공관을 통하여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홍보하는 등 적반하장·안하무인 격의 독도 침탈 야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일본이 과거를 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이 과거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어떤 만행을 저질렀는지 전 세계에 알려야 합니다.

과거사에 대한 반성은커녕 오히려 더 노골적으로 군국주의 부활의 망령을 일삼고 있는 일본을 상대로 과거 침략의 참혹한 만행, 위안부 강제동원, 강제징병, 강제징용 등 일제 만행의 잔학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사진 전시회를 전개해야 합니다.

주한 일본대사관에서부터 시작해서 태평양전쟁 동아시아 피해국가의 재외공관, 나아가 전 세계의 재외공관 곳곳에서 개최해서 일본의 만행을 전 세계에 낱알이 밝히고 알려야 합니다.

일본이 과거 침략의 연장선에서 아직도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부당하게 우기고 있음을 국제사회에 알려야 합니다.

전 국민과 전 세계 700만 해외 동포들이 하나 같이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과거사에 대해 전혀 죄의식이 없는 일본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함께 느끼는 분노, 이번에는 반드시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 줘야

합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오전 창립총회를 개최한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한 의원 모임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역사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감을 했습니다.

이완용이 누구인지 묻는 질문에 독립군이라고 대답하는 청소년이 있고 삼일절이 무슨 날인지, 8·15 광복절이 무슨 날인지도 모르는 우리 국민의 역사 인식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공유했습니다.

역사는 국가와 민족의 혼입니다.

5000년의 찬란한 역사, 굴욕의 역사를 극복하기 위한 투쟁의 역사, 그리고 우리가 창조해 낸 번영과 영광의 새 역사, 영구히 번영해 나가야 할 자랑스러운 한민족의 역사를 생생히 국민들과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우리 국회의원들께서 이런 역사 인식에 기초해 역사교육 강화와 관련된 법안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한 의원 모임에 많은 의원님들께서 함께 참여해 주실 것도 부탁드립니다.

국가는 역사가 올바르게 기억되고 미래의 방향을 제대로 찾아갈 수 있도록 국민에게 민족적 자긍심과 정체성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심어 주고 올바른 국가관과 역사관을 정립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 막중한 역할에 우리 국회가 앞장서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모든 의원님들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박병석** 다음은 오늘 5분자유발언 마지막 순서입니다.

민주당 박완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주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 부의장님, 선배·동료 여러분!

민주당 충남 천안을 박완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최근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

련해 국민의 우려스러운 목소리를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달 현오석 부총리가 경기도 시화산업단지를 찾아 수도권 규제 완화 방침을 밝히는 말을 했습니다. 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수도권 규제를 포함해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수도권 규제 완화가 정부 방침인양 해석되게 말했습니다.

곧바로 기획재정부는 수도권 규제 완화는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해명자료를 냈고 다음날 국회에 출석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정부가 규제 개선을 위한 법률 정비 대상에 수도권 규제 완화를 담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3개가 포함돼 있다고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또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것입니까?

국민 여론을 떠보고 있는 것입니까?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대통합을 위한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겠다고 했습니다.

박근혜정부가 발표한 140개 국정과제 중 지역 균형발전은 112번째 과제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헌법 제123조2항은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 균형발전은 헌법적 가치입니다.

경북도의회, 대전시의회, 세종시의회, 충남도의회, 충북도의회는 물론 전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 동남권경제협의회, 13개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해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연일 내고 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바라고 있는데 왜 정부가 나서서 갈등을 야기하는 것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 때부터 국민 대통합이 최고의 가치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왜 분열의 정치를 하시는 겁니까?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야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논리는 대한민국 국민을 수도권 국민과 비수도권 국민으로 분열시키는 논리입니다. 대표적인 분열적 정책인 것입니다.

지난 이명박정부 5년 동안 경제가 어렵다, 기

업이 어렵다며 수도권 규제 완화를 요구했고 실제 상당 부분 풀어 줬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살아났습니까? 기업이 투자를 늘렸나요?

박근혜 대통령은 선친인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수도권 규제를 포기하고 이명박정부처럼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답습하려는 것입니까? 이명박정부 2기 박근혜 정부라고 선언하고 싶습니까?

지난 30일 국무회의 안전에 보류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은 수도권 자연보전권역까지 대학이전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MB정부에서 입법 예고한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입니다.

수도권 규제는 법에 명시하고 있는데 시행령으로 인하여 법 취지를 무산시키려는 MB정부식 수도권 규제 완화 방향은 매우 잘못된 정책입니다.

시작한 지 3개월도 안 된 정부가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시행령 개정이라는 꼼수를 통해 시행하면 되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께 요구합니다.

갈등 유발의 신호탄인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십시오.

또 대통령이 주재해 관계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을 모두 불러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만들기 위한 정책 간담회를 즉각 개최할 것을 제안합니다.

박근혜정부는 선 지방육성, 후 규제완화 원칙을 견지하겠다고면서도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서울 성수동에 110층짜리 현대자동차그룹 건물 만들고 종로에 대한항공 7성급 호텔, 강서구에 LG R&D센터를 짓는 것을 허가하기 위해 수도권 규제 완화를 주장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굳이 수도권이어야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10대 재벌의 쌓아 놓은 사내유보금은 자본금의 14배, 183조 원입니다. 우리 정부 1년 예산의 절반이 넘는 돈을 투자 없이 그냥 쌓아 놓고 있습니다.

사상 최대의 유보금을 쌓아 놓고 있는 대기업에게도 엄중히 경고합니다.

쉽게 돈 벌려고 수도권 규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완화가 되지 않으면 투자를 회피하겠다는 협박,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수도권을 지역구로 두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느 지역구 의원이 자기 지역의 발전에 앞장서지 않겠습니까?

내 지역의 발전을 위해 수도권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수도권 출신 의원님들의 마음은 백번 이해합니다. 경기가 어려운 시점에 좋은 기업 유치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싶은 것은 누구나 똑같은 목표일 것입니다.

그러나 골고루 모두가 잘살 수 있는 균형발전, 국민 통합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지방과 함께 잘살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통합이고 상생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병석 저녁을 거른 채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여러분들을 국민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44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경기도 여주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투표 의원(226인)

찬성 의원(226인)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은희	강창일	강창희
고희선	권성동	권은희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준	김기현	김도읍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주
김성찬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용익	김용태
김우남	김을동	김재경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제남
김종태	김종훈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흠	김학용
김한길	김한표	김현미	김현숙
김형태	김희국	남경필	남인순
노웅래	류성걸	류지영	문대성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강석호	강은희	강창일	강창희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민식	강희선	강권성	강권은	강경협
박범계	박병석	박성효	박수현	김관영	김광림	김기선	김기준
박영선	박완주	박원석	박인숙	김기현	김도읍	김동철	김명연
박주선	박창식	박홍근	배기운	김무성	김미희	김상민	김상훈
배재정	백균기	변재일	부좌현	김상희	김성주	김성찬	김승남
서기호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김영우	김영주	김용익	김용태
설훈	성완종	손인춘	송광호	김우남	김윤덕	김재경	김재연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제남
신계륜	신기남	신의진	신장용	김태년	김태원	김진표	김춘진
신학용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김태년	김태원	김태흠	김학용
안규백	안덕수	안종범	안철수	김한길	김한표	김현미	김현숙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김형태	김희국	남경필	노웅래
염동열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류성결	류지영	문대성	문재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유기홍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우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남춘
유은혜	유인태	윤관석	윤명희	박대동	박대출	박범계	박병석
윤상현	윤재옥	윤진식	윤호중	박성효	박수현	박영선	박완주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군현	박원석	박인숙	박주선	박창식
이낙연	이노근	이명수	이목희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백균기
이미경	이상규	이상민	이상일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상기
이상직	이석기	이석현	이언주	서영교	서용교	설훈	성완종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손인춘	송광호	송영근	송호창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李宰榮	신의진	신장용	신학용	심재권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이찬열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안종범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해찬	양승조	여상규	염동열	오병윤
이현승	인재근	임수경	장윤석	오영식	오제세	우원식	우윤근
전정희	전해철	정갑윤	정몽준	원유철	유기홍	유대운	유성엽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유승민	유승우	유인태	윤관석
정수성	정진후	정청래	정희수	윤명희	윤상현	윤재옥	윤진식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조현룡	주승용	진선미	진성준	이낙연	이노근	이명수	이목희
최경환	최규성	최민희	최봉홍	이미경	이상규	이상민	이상일
최원식	최재천	추미애	하태경	이상직	이석기	이석현	이언주
한기호	한정애	함진규	현영희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홍익표	홍일표	홍종학	홍지만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李宰榮
황영철	황주홍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춘석	이학영	이학재
				이한구	이해찬	이현승	인재근
				임수경	장윤석	전정희	전해철
				정갑윤	정몽준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수성	정진후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안

투표 의원(224인)

찬성 의원(212인)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정청래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조현룡 주승용
 진선미 최경환 최규성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천 추미애
 하태경 한정애 함진규 현영희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익표
 홍일표 홍종학 홍지만 황영철

반대 의원(3인)

김세연 진성준 황주홍

기권 의원(9인)

김광진 김민기 김영록 남인순
 박민식 유은혜 이한성 한기호
 홍의락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종범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염동열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유기홍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유인태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재옥 윤진식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균현 이낙연
 이노근 이명수 이목희 이미경
 이상규 이상민 이상일 이상직
 이석기 이석현 이언주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李宰榮 이종걸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해찬
 이헌승 인재근 임수경 장윤석
 전정희 전해철 정갑윤 정몽준
 정문현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수성 정진후 정청래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조현룡 주승용 진선미 진성준
 최경환 최규성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천 추미애 하태경
 한기호 함진규 현영희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종학 홍지만 황영철

기권 의원(1인)

한정애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30인)

찬성 의원(229인)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은희 강창일 강창희
 고희선 권성동 권은희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준 김기현 김도읍 김명연
 김무성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주 김성찬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용익 김용태 김우남
 김윤덕 김을동 김재경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제남
 김종태 김종훈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호 김태흠
 김학용 김한길 김한표 김현미
 김현숙 김형태 김희국 남경필
 남인순 노웅래 류성걸 류지영
 문대성 문재인 문정립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민식 박범계 박병석 박성효
 박수현 박영선 박완주 박원석
 박인숙 박주선 박창식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백균기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병수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설훈 성완중
 손인춘 송광호 송영근 송호창
 신경립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의진 신장용 신학용 심재권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30인)

찬성 의원(228인)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은희 강창일 강창희
 고희선 권성동 권은희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준 김기현 김도읍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주
 김성찬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용익 김용태

김우남	김윤덕	김을동	김재경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제남	김종태	김종훈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호
김태흠	김학용	김한길	김한표
김현미	김현숙	김형태	김희국
남경필	남인순	노웅래	류성걸
류지영	문대성	문재인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민식	박범계	박병석	박성효
박수현	박영선	박완주	박원석
박인숙	박주선	박창식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백균기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병수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설훈	성완중
손인춘	송광호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의진	신장용	신학용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종범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염동열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유기홍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유인태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재옥	윤진식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균현	이노근
이명수	이목희	이미경	이상규
이상민	이상일	이상직	이석기
이석현	이언주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李宰榮	이종걸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해찬	이헌승
인재근	임수경	장윤석	전정희
전해철	정갑윤	정몽준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수성
정진후	정청래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정식	조현룡	주승용
진선미	진성준	최경환	최규성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천
추미애	하태경	한기호	한정애

함진규	현영희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종학	홍지만	황영철	황주홍

기권 의원(2인)

이낙연 조원진

(김재경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임수경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실제 투표 의원 230인, 찬성 의원 228인, 기권 의원 2인임)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29인)

찬성 의원(228인)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은희	강창일	강창희
고희선	권성동	권은희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준	김기현	김도읍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주
김성찬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용익	김용태
김우남	김윤덕	김을동	김재경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제남	김종태	김종훈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호
김태흠	김학용	김한길	김한표
김현미	김현숙	김형태	김희국
남경필	남인순	노웅래	류성걸
류지영	문대성	문재인	문정림
민홍철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박대출	박기춘	박남춘	박대동
박성효	박민식	박범계	박병석
박원석	박수현	박영선	박완주
박홍근	박인숙	박주선	박창식
변재일	배기운	배재정	백균기
서상기	부좌현	서기호	서병수
성완중	서영교	서용교	설훈
송호창	손인춘	송광호	송영근
신기남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심재권	신의진	신장용	신학용
안덕수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효대	안종범	안철수	안홍준
오병윤	양승조	여상규	염동열
	오영식	오제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유기홍	유대운	변재일	부좌현	서병수	서용교
유성엽	유승민	유승우	유승희	성완중	손인춘	송광호	신경림
유은혜	유인태	윤관석	윤명희	신기남	신의진	심학봉	안덕수
윤상현	윤재옥	윤진식	윤호중	안중범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군현	여상규	염동열	원유철	유승우
이낙연	이명수	이목희	이미경	윤명희	윤상현	윤재옥	윤진식
이상규	이상민	이상일	이상직	윤후덕	이강후	이군현	이낙연
이석기	이석현	이언주	이에리사	이노근	이명수	이상일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이재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자스민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李宰榮
이장우	이재영	李宰榮	이종걸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철우	이한구	이한성	이헌승
이찬열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장윤석	전하진	정갑윤	정몽준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해찬	정문현	정성호	정수성	정희수
이헌승	인재근	임수경	장윤석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전정희	전해철	정갑윤	정몽준	조현룡	주호영	최경환	최봉홍
정문현	정성호	정세균	정수성	최재성	하태경	함진규	현영희
정진후	정청래	정희수	조경태	홍문종	홍문표	홍일표	홍지만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조현룡	황영철	황주홍		
주승용	진선미	진성준	최경환	반대 의원(69인)			
최규성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강동원	김경협	김관영	김광진
최재천	추미애	하태경	한정애	김기준	김동철	김미희	김민기
함진규	현영희	홍문종	홍문표	김상희	김성주	김성찬	김승남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김영주	김용익	김재연	김제남
홍종학	홍지만	황영철	황주홍	김태년	김형태	남인순	박수현

기권 의원(1인)

이노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투표 의원(226인)

찬성 의원(130인)

강기윤	강길부	강석호	강은희
강창희	고희선	권은희	김광림
김기선	김기현	김도읍	김명연
김무성	김상민	김세연	김영록
김영우	김용태	김을동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정훈	김종태
김종훈	김진표	김춘진	김태원
김태흠	김학용	김한길	김한표
김현	김현숙	김희국	나성린
남경필	류성걸	류지영	문대성
문정림	문희상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민식	박범계	박병석
박성효	박인숙	박주선	박창식

기권 의원(27인)

강기정	강창일	김윤덕	김현미
노웅래	민병두	박완주	서기호
설훈	심재권	심재철	오영식
우상호	우원식	유승희	유인태
윤호중	이목희	이미경	이상직
이인영	이학재	전병헌	전정희

전 해 철 조 경 태 한 정 애

○2013년도 기술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

투표 의원(223인)

찬성 의원(166인)

강 기 윤	강 기 정	강 길 부	강 석 호
강 은 희	강 창 일	강 창 희	고 희 선
권 은 희	김 경 협	김 관 영	김 광 립
김 광 진	김 기 선	김 기 현	김 도 읍
김 명 연	김 무 성	김 상 민	김 성 주
김 성 찬	김 세 연	김 승 남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영 주	김 용 익	김 용 태
김 윤 덕	김 을 동	김 재 원	김 재 윤
김 정 록	김 정 훈	김 종 태	김 종 훈
김 진 표	김 춘 진	김 태 원	김 태 흠
김 학 용	김 한 길	김 한 표	김 현
김 현 숙	김 형 태	김 회 국	나 성 름
남 경 필	류 성 결	류 지 영	문 대 성
문 정 립	문 희 상	민 병 두	민 병 주
민 현 주	박 기 춘	박 대 동	박 대 출
박 덕 흠	박 민 식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성 효	박 완 주	박 인 숙	박 주 선
박 창 식	백 군 기	부 좌 현	서 병 수
서 용 교	성 완 종	손 인 춘	송 광 호
송 영 근	신 경 립	신 기 남	신 의 진
신 장 용	심 재 권	심 재 철	심 학 봉
안 덕 수	안 중 범	안 철 수	안 홍 준
안 효 대	여 상 규	염 동 열	오 영 식
우 상 호	우 원 식	우 윤 근	원 유 철
유 승 민	유 승 우	윤 관 석	윤 명 희
윤 상 현	윤 재 옥	윤 진 식	윤 후 덕
이 강 후	이 군 현	이 노 근	이 명 수
이 미 경	이 상 일	이 상 직	이 언 주
이에리사	이 완 영	이 우 현	이 운 룡
이 윤 석	이 이 재	이자스민	이 장 우
이 재 영	李 宰 榮	이 종 결	이 종 진
이 종 훈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철 우
이 학 재	이 한 구	이 한 성	이 현 승
장 윤 석	전 병 헌	전 하 진	전 해 철
정 갑 윤	정 몽 준	정 문 헌	정 성 호
정 세 균	정 수 성	정 희 수	조 경 태
조 명 철	조 원 진	조 정 식	조 해 진
조 현 룡	주 승 용	주 호 영	진 성 준
최 경 환	최 봉 홍	최 재 성	최 재 천
하 태 경	함 진 규	현 영 희	홍 문 중

홍 문 표 홍 영 표 홍 일 표 홍 지 만
황 영 철 황 주 홍

반대 의원(20인)

강 동 원	김 미 희	김 재 연	김 제 남
남 인 순	박 홍 근	신 학 용	안 규 백
오 병 윤	오 제 세	유 대 운	은 수 미
이 상 규	이 원 옥	이 찬 열	임 수 경
정 청 래	진 선 미	최 민 희	한 명 숙

기권 의원(37인)

김 기 준	김 동 철	김 민 기	김 상 희
김 태 년	김 현 미	노 응 래	민 홍 철
박 수 현	박 원 석	배 재 정	백 재 현
변 재 일	서 기 호	서 영 교	설 훈
신 경 민	심 상 정	양 승 조	유 기 홍
유 성 엽	유 승 희	유 은 혜	유 인 태
윤 호 중	이 목 희	이 상 민	이 석 현
이 인 영	인 재 근	전 정 희	정 진 후
최 원 식	추 미 애	한 정 애	홍 의 락
홍 익 표			

○2013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

투표 의원(221인)

찬성 의원(165인)

강 기 윤	강 기 정	강 길 부	강 석 호
강 은 희	강 창 일	강 창 희	고 희 선
권 은 희	김 경 협	김 관 영	김 광 립
김 광 진	김 기 선	김 기 현	김 도 읍
김 명 연	김 무 성	김 상 민	김 성 주
김 성 찬	김 세 연	김 승 남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영 주	김 용 익	김 용 태
김 윤 덕	김 을 동	김 재 원	김 재 윤
김 정 록	김 정 훈	김 종 태	김 종 훈
김 진 표	김 춘 진	김 태 원	김 태 흠
김 학 용	김 한 길	김 한 표	김 현
김 현 숙	김 형 태	김 회 국	나 성 름
남 경 필	류 성 결	류 지 영	문 대 성
문 정 립	문 희 상	민 병 두	민 병 주
민 현 주	박 기 춘	박 대 동	박 덕 흠
박 민 식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성 효
박 완 주	박 인 숙	박 주 선	박 창 식
백 군 기	변 재 일	부 좌 현	서 기 호
서 병 수	성 완 종	손 인 춘	송 광 호
송 영 근	신 경 립	신 기 남	신 의 진
신 장 용	심 상 정	심 재 권	심 재 철
안 덕 수	안 수	안 범	안 철

안 홍 준	안 효 대	여 상 규	염 동 열	김 성 찬	김 세 연	김 승 남	김 영 우
오 영 식	우 상 호	우 원 식	우 윤 근	김 영 주	김 용 태	김 윤 덕	김 을 동
원 유 철	유 승 우	윤 관 석	윤 명 희	김 재 원	김 재 윤	김 정 록	김 정 훈
윤 상 현	윤 재 옥	윤 진 식	윤 후 덕	김 종 태	김 중 훈	김 진 표	김 춘 진
이 강 후	이 균 현	이 낙 연	이 노 근	김 태 원	김 태 흠	김 학 용	김 한 길
이 명 수	이 상 일	이 상 직	이에리사	김 한 표	김 현	김 현 숙	김 형 태
이 완 영	이 우 현	이 운 룡	이 윤 석	김 희 국	나 성 린	남 경 필	류 성 결
이 이 재	이자스민	이 장 우	이 재 영	류 지 영	문 대 성	문 정 립	문 희 상
李 宰 榮	이 중 결	이 중 진	이 중 훈	민 병 두	민 병 주	민 현 주	민 홍 철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철 우	이 학 재	박 기 춘	박 대 동	박 덕 흠	박 민 식
이 한 구	이 한 성	이 현 승	장 윤 석	박 병 석	박 성 호	박 완 주	박 인 숙
전 병 현	전 하 진	전 해 철	정 갑 윤	박 주 선	박 창 식	백 군 기	변 재 일
정 몽 준	정 문 현	정 성 호	정 세 균	부 좌 현	서 병 수	성 완 종	손 인 춘
정 수 성	정 희 수	조 경 태	조 명 철	송 광 호	송 영 근	신 경 립	신 기 남
조 원 진	조 정 식	조 해 진	조 현 룡	신 의 진	신 장 용	심 상 정	심 재 권
주 승 용	주 호 영	진 성 준	최 경 환	심 재 철	심 학 봉	안 덕 수	안 중 범
최 봉 홍	최 재 천	추 미 애	하 태 경	안 철 수	안 홍 준	안 효 대	여 상 규
함 진 규	현 영 희	홍 문 중	홍 문 표	염 동 열	오 영 식	우 상 호	우 원 식
홍 영 표	홍 일 표	홍 지 만	황 영 철	우 윤 근	원 유 철	유 승 민	유 승 우
황 주 홍				윤 관 석	윤 명 희	윤 상 현	윤 재 옥

반대 의원(20인)

강 동 원	김 미 희	김 재 연	남 인 순
박 홍 근	신 학 용	안 규 백	오 병 윤
오 제 세	유 기 홍	유 대 운	은 수 미
이 상 규	이 원 욱	이 찬 열	임 수 경
정 청 래	진 선 미	최 민 희	한 명 숙

기권 의원(36인)

김 기 준	김 동 철	김 민 기	김 상 희
김 제 남	김 태 년	김 현 미	노 응 래
민 홍 철	박 수 현	박 원 석	배 재 정
백 재 현	서 영 교	설 훈	신 경 민
양 승 조	유 성 엽	유 승 희	유 은 혜
유 인 태	윤 호 중	이 목 희	이 미 경
이 상 민	이 석 현	이 언 주	이 인 영
인 재 근	장 하 나	전 정 희	정 진 후
최 원 식	한 정 애	홍 의 락	홍 익 표

이 낙 연	이 노 근	이 명 수	이에리사
이 상 직	이 석 현	이 에 리 사	이 완 영
이 우 현	이 윤 석	이 이 재	이자스민
이 장 우	이 재 영	李 宰 榮	이 중 진
이 중 훈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철 우	이 학 재	이 한 구	이 한 성
이 현 승	장 윤 석	전 병 현	전 하 진
진 해 철	정 갑 윤	정 몽 준	정 문 현
정 성 호	정 세 균	정 수 성	정 희 수
조 경 태	조 명 철	조 원 진	조 정 식
조 해 진	조 현 룡	주 승 용	주 호 영
진 성 준	최 경 환	최 봉 홍	최 재 성
최 재 천	추 미 애	하 태 경	함 진 규
현 영 희	홍 문 중	홍 문 표	홍 영 표
홍 일 표	홍 지 만	황 영 철	황 주 홍

반대 의원(18인)

김 미 희	김 민 기	김 용 익	김 재 연
남 인 순	박 홍 근	신 학 용	안 규 백
오 제 세	유 대 운	은 수 미	이 상 규
이 중 결	임 수 경	정 청 래	진 선 미
최 민 희	한 명 숙		

기권 의원(39인)

강 동 원	김 기 준	김 동 철	김 상 희
김 영 록	김 제 남	김 태 년	김 현 미

○2013년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

투표 의원(221인)

찬성 의원(164인)

강 기 윤	강 기 정	강 길 부	강 석 호
강 은 희	강 창 일	강 창 희	고 희 선
권 은 희	김 경 협	김 관 영	김 광 립
김 광 진	김 기 선	김 기 현	김 도 읍
김 명 연	김 무 성	김 상 민	김 성 주

노영민	노웅래	박수현	박원석
배재정	백재현	서기호	서영교
설훈	신경민	양승조	유기홍
유성엽	유승희	유은혜	유인태
윤호중	이목희	이미경	이상민
이언주	이원욱	이인영	인재근
장하나	전정희	정진후	최원식
한정애	홍의락	홍익표	

정문현	정성호	정세균	정수성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조현룡	주승용
주호영	최경환	최봉홍	최재성
최재천	하태경	함진규	현영희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일표
홍지만	황영철	황주홍	

반대 의원(31인)

강동원	김미희	김민기	김성주
김용익	김재연	김제남	남인순
박원석	박홍근	신학용	심상정
안규백	오병윤	오제세	유대운
은수미	이상규	이원욱	이종걸
이찬열	임수경	장하나	정진후
정청래	진선미	진성준	최민희
한명숙	홍의락	홍익표	

기권 의원(33인)

김기준	김상희	김영록	김태년
김현미	노영민	노웅래	박수현
배재정	백재현	서기호	서영교
설훈	신경민	심재철	양승조
유기홍	유성엽	유승희	유은혜
유인태	윤호중	이목희	이미경
이상민	이언주	이인영	인재근
전병헌	전정희	최원식	추미애
한정애			

○2013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투표 의원(223인)

찬성 의원(159인)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석호
강은희	강창일	강창희	고희선
권은희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현	김도읍
김명연	김무성	김상민	김성찬
김세연	김승남	김영우	김영주
김용태	김윤덕	김을동	김장실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정훈
김종태	김종훈	김진표	김춘진
김태원	김태흠	김학용	김한길
김한표	김현	김현숙	김형태
김희국	나성린	남경필	류성걸
류지영	문대성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대동	박덕흠	박민식
박범계	박병석	박성효	박완주
박인숙	박주선	박창식	백군기
변재일	부좌현	서병수	성완종
손인춘	송광호	송영근	신경림
신기남	신의진	신장용	심재권
심학봉	안덕수	안종범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여상규	염동열
오영식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유승민	유승우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재옥	윤진식
윤후덕	이강후	이균현	이낙연
이노근	이명수	이상일	이상직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윤석	이이재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李率榮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철우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현승	장윤석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몽준

○2013년도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투표 의원(223인)

찬성 의원(180인)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은희	강창희	고희선
권은희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현	김도읍
김명연	김무성	김상민	김성주
김성찬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용태	김윤덕
김을동	김장실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정훈	김제남	김종태
김종훈	김진표	김춘진	김태원
김태흠	김학용	김한표	김현
김현숙	김형태	김희국	나성린
남경필	노영민	류성걸	류지영
문대성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대동	박덕흠	박민식	박범계
박병석	박성효	박완주	박인숙
박주선	박창식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병수
서영교	성완중	손인춘	송광호
송영근	신경림	신기남	신의진
신장용	심상정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안덕수	안종범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여상규	염동열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유대운	유승민
유승우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재옥	윤진식	윤후덕	이강후
이균현	이낙연	이노근	이명수
이미경	이상일	이상직	이석현
이언주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李宰榮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철우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현승	장윤석	장하나
전병헌	전정희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몽준	정문헌	정성호
정세균	정수성	정진후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조현룡	주승용	주호영
진성준	최경환	최봉홍	최재성
최재천	추미애	함진규	현영희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일표	홍지만	황영철	황주홍

○2013년도 무역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

투표 의원(222인)

찬성 의원(175인)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석호
강은희	강창일	강창희	고희선
권은희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현	김도읍
김명연	김무성	김상민	김성찬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용태	김윤덕	김을동
김장실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정훈	김제남	김종태	김종훈
김진표	김춘진	김태원	김태흠
김학용	김한표	김현	김현숙
김형태	김희국	나성린	남경필
노영민	류성걸	류지영	문대성
문정림	문희상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대동	박덕흠
박민식	박범계	박병석	박성효
박완주	박인숙	박주선	박창식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병수	성완중	손인춘
송광호	송영근	신경림	신기남
신의진	신장용	심상정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안덕수	안종범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여상규
염동열	오영식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유대운	유승민
유승우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재옥	윤진식	윤후덕	이강후
이균현	이낙연	이노근	이명수
이미경	이상일	이상직	이석현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李宰榮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철우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현승
장윤석	장하나	전병헌	전정희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몽준
정문헌	정성호	정세균	정수성
정진후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조현룡
주승용	주호영	진성준	최경환
최봉홍	최재성	최재천	추미애

반대 의원(13인)

김미희	김용익	김재연	남인순
박홍근	신학용	안규백	오병윤
은수미	이상규	이종걸	정청래
진선미			

기권 의원(30인)

강창일	김기준	김동철	김민기
김태년	김현미	노웅래	박수현
박원석	배재정	설훈	신경민
양승조	유기홍	유성엽	유승희
유은혜	유인태	윤호중	이목희
이상민	이인영	인재근	임수경
최민희	최원식	하태경	한명숙
한정애	홍익표		

하태경	함진규	현영희	홍문종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유대운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일표	유승민	유승우	윤관석	유명희
홍지만	황영철	황주홍		윤상현	윤재욱	윤진식	유후덕
반대 의원(18인)							
김미희	김민기	김용익	김재연	이강후	이군현	이낙연	이노근
남인순	박홍근	신학용	안규백	이명수	이상일	이에리사	이완영
오병윤	오제세	은수미	이상규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종걸	이찬열	임수경	정청래	이이재	이차스민	이장우	이재영
진선미	최민희			李宰榮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기권 의원(29인)							
강동원	김기준	김상희	김성주	이진복	이철우	이학재	이한구
김태년	김현미	노웅래	박수현	이한성	이현승	장윤석	장하나
박원석	배재정	서영교	설훈	전병헌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신경민	양승조	유기홍	유성엽	정문헌	정성호	정세균	정수성
유승희	유은혜	유인태	윤호중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이목희	이상민	이언주	이인영	조정식	조해진	조현룡	주승용
인재근	최원식	한명숙	한정애	주호영	진성준	최경환	최봉홍
홍익표				최재성	최재천	추미애	하태경
				한명숙	함진규	현영희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일표	홍지만
				황영철	황주홍		

○2013년도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투표 의원(221인)

찬성 의원(166인)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은희	강창일	강창희
고희선	권은희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현
김도읍	김명연	김무성	김상민
김성찬	김세연	김승남	김영우
김영주	김용태	김윤덕	김을동
김장실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정훈	김종태	김종훈	김진표
김춘진	김태원	김태흠	김학용
김한표	김현	김현숙	김형태
김희국	나성린	남경필	노영민
류성걸	류지영	문대성	문정림
문희상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대동	박덕흠	박민식
박범계	박병석	박성효	박완주
박인숙	박주선	박창식	백군기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병수
서영교	성완종	손인춘	송광호
송영근	신경림	신기남	신장용
심상정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안덕수	안종범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여상규	염동열	우상호

반대 의원(21인)

김미희	김민기	김용익	김재연
남인순	박홍근	신학용	안규백
오병윤	오제세	은수미	이미경
이상규	이종걸	이찬열	임수경
정청래	진선미	최민희	홍의락
홍익표			

기권 의원(34인)

김기준	김동철	김상희	김성주
김영록	김제남	김태년	김현미
노웅래	박수현	박원석	배재정
백재현	설훈	신경민	양승조
오영식	유기홍	유성엽	유승희
유은혜	유인태	윤호중	이목희
이상민	이상직	이석현	이언주
이인영	인재근	전정희	정진후
최원식	한정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4인)

찬성 의원(203인)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은희	강창일	고희선	권은희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준	김기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성주	김성찬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용익	김용태	김윤덕	김을동
김장실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제남	김종태	김종훈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흠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현숙	김형태	김희국	나성린
남경필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류성걸	류지영	문대성	문정림
문희상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대동	박덕흠	박범계
박병석	박성효	박수현	박완주
박원석	박인숙	박주선	박창식
박홍근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병수
서영교	설훈	성완종	손인춘
송광호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기남	신의진	신장용
신학용	심상정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덕수	안종범	안철수
안홍준	양승조	여상규	염동열
오영식	오제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유인태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재옥
윤진식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군현	이낙연	이노근
이명수	이목희	이미경	이상규
이상민	이상일	이석현	이언주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李宰榮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철우	이학재	이한성
이현승	인재근	임수경	장윤석
장하나	전병헌	전정희	전하진
정갑윤	정문헌	정성호	정수성
정진후	정청래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해진	주승용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최경환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천
추미애	하태경	한기호	한명숙
한정애	함진규	현영희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지만	황영철	황주홍	
기권 의원(1인)			
오병운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9인)

찬성 의원(202인)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은희	강창일	고희선	권은희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준	김기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상희	김성주	김성찬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용익	김용태	김윤덕
김을동	김장실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종태	김종훈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흠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현숙	김형태	김희국	나성린
남경필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류성걸	류지영	문대성	문정림
문희상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대동	박범계	박병석
박성효	박수현	박완주	박인숙
박주선	박창식	박홍근	배재정
백군기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병수	서영교	설훈	성완종
손인춘	송광호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기남	신의진	신장용
신학용	심상정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덕수	안종범	안철수
안홍준	양승조	여상규	염동열
오병운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유인태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재옥	윤진식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군현
이낙연	이노근	이명수	이목희
이미경	이상규	이상민	이상일
이언주	이언주	이에리사	이완영
이운룡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재영	이종훈	이철우	이현승	전병헌	정갑윤	정수성	조명철	주호영	최봉홍	하태경	함진규	홍의락	황영철
이인영	이주영	이학재	인재근	전정희	정문헌	정청래	조원진	진선미	최원식	한기호	현영희	홍익표	황주홍
이자스민	이종걸	이진복	이한구	임수경	전하진	정성호	조해진	진성준	최재천	한명숙	홍문표	홍일표	
이장우	이종진	이찬열	이한성	장윤석	전해철	정세균	주승용	최경환	추미애	한정애	홍영표	홍지만	
신기남	신재권	안종범	여상규	오제세	원유철	유승우	윤관석	윤호중	이군현	이석현	이우현	이이재	이재영
신장용	신재철	안철수	염동열	우상호	유대운	유승희	윤명희	윤후덕	이낙연	이미경	이언주	이인영	이재영
신학용	안규백	안홍준	오병윤	우원식	유성엽	유은혜	윤재옥	은수미	이노근	이상규	이에리사	이자스민	이재영
심상정	안덕수	양승조	오영식	우윤근	유승민	유인태	윤진식	이강후	이명수	이상일	이완영	이장우	이재영
김제남	박원석	백재현	송영근	장하나	정진후	최민희							

기권 의원(7인)

○농림수산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7인)

찬성 의원(204인)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은희	강창일	고희선	권은희
김경협	김관영	김광립	김광진
김기선	김기준	김기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성주	김성찬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용익	김용태	김윤덕	김을동
김장실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제남	김종태	김종훈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흠	김한표	김현	김현숙
김형태	김희국	나성린	남경필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류성걸
류지영	문대성	문정림	문화상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대동	박덕흠	박범계	박병석
박성효	박수현	박완주	박원석
박인숙	박주선	박창식	박홍근
배재정	백균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병수	서영교
설훈	성완중	손인춘	송광호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기남	신재권	안종범	여상규	오제세	원유철	유승우	윤관석	윤호중	이군현	이석현	이우현	이이재	이재영
신장용	신재철	안철수	염동열	우상호	유대운	유승희	윤명희	윤후덕	이낙연	이미경	이언주	이인영	이재영
신학용	안규백	안홍준	오병윤	우원식	유성엽	유은혜	윤재옥	은수미	이노근	이상규	이에리사	이자스민	이재영
심상정	안덕수	양승조	오영식	우윤근	유승민	유인태	윤진식	이강후	이명수	이상일	이완영	이장우	이재영
김제남	박원석	백재현	송영근	장하나	정진후	최민희							

기권 의원(3인)

김상희 김현미 최민희
(김태흠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문정림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실제 찬성 의원 204인, 기권 의원 3인임)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08인)

찬성 의원(206인)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은희	강창일	고희선	권은희
김경협	김관영	김광립	김광진
김기준	김기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상희	김성주	김성찬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용익	김용태	김윤덕	김을동

김장실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제남	김종태	김종훈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흠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현숙	김형태	김희국	나성린
남경필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류성걸	류지영	문대성	문정림
문희상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대동	박덕흠	박범계
박병석	박성효	박수현	박완주
박원석	박인숙	박주선	박창식
박홍근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병수
서영교	설훈	성완중	손인춘
송광호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기남	신의진	신장용
신학용	심상정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덕수	안종범	안철수
안홍준	양승조	여상규	염동열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유대운
유승민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유인태	윤관석	윤명희	윤재옥
윤진식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균현	이낙연	이노근
이명수	이목희	이미경	이상규
이상민	이상일	이석현	이언주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李宰榮
이종걸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철우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현승	인재근
임수경	장윤석	장하나	전병헌
전정희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문헌	정성호	정세균	정수성
정진후	정청래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해진	주승용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최경환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천	추미애
하태경	한기호	한명숙	한정애
함진규	현영희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지만
황영철	황주홍		

기권 의원(2인)

윤상현 조원진

(정갑윤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실제 찬성 의원 206인, 반대 의원 없음, 기권 의원 2인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04인)

찬성 의원(204인)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은희	강창일	고희선	권은희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준	김기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용익	김용태	김을동	김장실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제남	김종태	김종훈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흠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현숙
김형태	김희국	나성린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류성걸	류지영
문대성	문정림	문희상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대동
박덕흠	박범계	박병석	박수현
박완주	박원석	박인숙	박주선
박창식	박홍근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병수	서영교	설훈	성완중
손인춘	송광호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기남	신의진
신장용	신학용	심상정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종범	안철수	안홍준	양승조
여상규	염동열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유인태	윤관석	윤명희	윤재옥
윤진식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균현	이낙연	이노근
이명수	이목희	이미경	이상규
이상민	이상일	이석현	이언주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李宰榮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철우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현승	인재근	임수경
장윤석	장하나	전병헌	전정희
전하진	정갑윤	정문헌	정성호
정세균	정수성	정진후	정청래
정희수	조경태	조원진	조해진
주승용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최경환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천	추미애	하태경	한기호
한명숙	한정애	함진규	현영희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지만	황영철	황주홍

원유철	원혜영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유인태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재옥	윤진식	윤호중	은수미
이강후	이근현	이낙연	이노근
이명수	이목희	이미경	이상규
이상민	이상일	이석현	이언주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李宰榮
이종걸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철우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현승	인재근
임수경	장윤석	장하나	전병헌
전정희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문헌	정성호	정세균	정수성
정진후	정청래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해진	주승용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최경환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천
추미애	하태경	한기호	한명숙
한정애	함진규	현영희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지만	황영철	황주홍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07인)

찬성 의원(207인)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은희	강창일	고희선	권은희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준	김기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세연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용익	김용태	김윤덕	김을동
김장실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제남	김종태	김종훈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흠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현숙
김형태	김희국	나성린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류성걸	류지영
문대성	문정림	문희상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대동
박덕흠	박범계	박병석	박수현
박완주	박원석	박인숙	박주선
박창식	박홍근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병수	서영교	설훈	성완중
손인춘	송광호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기남	신의진
신장용	신학용	심상정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종범	안철수	안홍준	양승조
여상규	염동열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9인)

찬성 의원(208인)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은희	강창일	고희선	권은희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준	김기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용익	김용태	김윤덕
김을동	김장실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제남	김종태
김종훈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흠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현숙	김형태	김희국
나성린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류성걸	류지영	문대성	문정림
민병주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대동	박범계	박병석

박수현	박완주	박원석	박인숙	김명연	김무성	김미희	김민기
박주선	박창식	박홍근	박배재	김상민	김성주	김성찬	김세연
백균기	백재현	박변재	배부좌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서기호	서병수	서영교	부설	김용익	김영태	김윤덕	김을동
성완창	손인춘	송광호	송영근	김장실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기남	김정록	김제남	김종태	김종훈
신의진	신장용	신학용	신상규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신안	김태흠	김한표	김현국	김현미
안덕수	안종범	안철수	안홍준	김현숙	김형태	김희국	나성린
양승조	여상규	염동열	오병윤	남인순	김영민	노웅래	류성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류지영	문대성	문정림	류희상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대운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유성엽	유승민	유승우	유승희	박대동	박덕수	박완주	박병석
유은혜	유인태	유관석	유명희	박성호	박주선	박창식	박원석
윤상현	윤재옥	윤진식	윤호중	박인숙	박주선	박창현	박홍근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군현	배부좌	서기호	서병수	서영교
이낙연	이노근	이명수	이목희	송영근	성완창	손인춘	송광호
이석현	이상규	이상민	이상일	신기남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심상정	신재권	신재철	심학봉
이재	이인영	이장우	이재영	안규백	안덕수	안종범	안철수
李宰榮	이종걸	이종진	이종훈	안홍준	양승조	여상규	염동열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철우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현승	유대운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인재근	임수경	장윤석	장하철	유승희	유성엽	유승민	유승우
전병헌	전정희	전하진	전해준	윤명희	유은혜	유인태	유관석
정갑윤	정문헌	정성호	정세균	윤호중	윤상현	윤재옥	윤진식
정수성	정진후	정청래	정희수	이군현	이낙연	이노근	이명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해진	이목희	이미경	이상규	이상민
주승용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이상일	이석현	이언주	이에리사
최경환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최재천	추미애	하태경	한기호	이윤석	이재영	이인영	이자스민
한명숙	한정애	함진규	현영희	이장우	이재영	李宰榮	이종걸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이찬열	이철우	이학재	이진복
홍일표	홍지만	황영철	황주홍	이한성	이헌승	인재근	이한구

기권 의원(1인)

박덕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9인)

찬성 의원(209인)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은희	강창일	고희선	강은희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준	김기현	김동철

현영희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지만 황영철
 황주홍
 (문정림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실제 찬성
 의원 209인, 기권 의원 없음)

이상민 이상일 이석현 이언주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李宰榮
 이종걸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철우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현승 인재근
 장하나 전병헌 전정희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문헌 정성호
 정세균 정수성 정진후 정청래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해진 주승용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최경환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천 추미애 하태경
 한기호 한명숙 한정애 함진규
 현영희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지만 황영철
 황주홍

기권 의원(1인)

백재현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10인)

찬성 의원(209인)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은희 강창일 고희선 권은희
 김경협 김관영 김광립 김광진
 김기선 김기준 김기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용익 김용태 김윤덕
 김을동 김장실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제남 김종태
 김종훈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흠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현숙 김형태 김희국
 나성린 남경필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류성걸 류지영 문대성
 문정림 문희상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대동 박덕흠
 박범계 박병석 박성효 박수현
 박완주 박원석 박인숙 박주선
 박창식 박홍근 배재정 백균기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병수
 서영교 설훈 성완중 손인춘
 송광호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기남 신의진 신장용
 신학용 심상정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중범
 안철수 안홍준 양승조 여상규
 염동열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유인태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재옥
 윤진식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균현 이낙연 이노근
 이명수 이목희 이미경 이상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09인)

찬성 의원(209인)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은희 강창일 고희선 권은희
 김경협 김관영 김광립 김광진
 김기선 김기준 김기현 김명연
 김무성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용익 김용태 김윤덕 김을동
 김장실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제남 김종태 김종훈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흠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현숙 김형태 김희국 나성린
 남경필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류성걸 류지영 문대성 문정림
 문희상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대동 박덕흠 박범계
 박병석 박성효 박수현 박완주
 박원석 박인숙 박주선 박창식
 박홍근 배재정 백균기 백재현
 부좌현 서기호 서영교 설훈

성완중	손인춘	송광호	송영근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기남	김영주	김익실	김용태	김윤덕
신의진	신장용	신학용	신상규	김을동	김장실	김재연	김재원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신안규	김재윤	김정록	김제남	김종훈
안덕수	안종범	안철수	안홍준	김진표	김춘진	김태현	김태원
양승조	여상규	염동열	오병윤	김태흠	김한표	김현국	김현미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김현숙	김형태	김희영	나성린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대운	남경필	남순영	노영민	노웅래
유성엽	유승민	유승우	유승희	남성걸	남지영	문대성	문정림
유은혜	유인태	윤관석	윤명희	문희상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윤상현	윤재옥	윤진식	윤호중	박기춘	박대동	박덕흠	박범계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군현	박병석	박성효	박수현	박완주
이낙연	이노근	이명수	이목희	박원석	박인숙	박주선	박창식
이미경	이상규	이상민	이상일	박홍근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이석현	이연주	이에리사	이완영	변영재	부설	서기호	서병수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운석	송광호	송영근	성완중	손인춘
이재영	이인영	이자스민	이장우	송경민	송신기	송의진	신경림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신학봉	신상규	신재권	신재철
이철우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안철수	안홍준	안양승	안종범
이현승	인재근	임수경	장윤석	염동열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장하나	전병헌	전정희	전하진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전해철	정갑윤	정문헌	정성호	유승우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정세균	정수성	정진후	정청래	윤관석	유승희	유은혜	유인태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윤진식	윤호중	윤상현	윤재옥
조해진	주승용	주호영	진선미	이강후	이군현	이낙연	이노근
진성준	최경환	최민희	최봉홍	이명수	이목희	이미경	이상규
최원식	최재천	추미애	하태경	이상민	이완영	이우현	이연주
한기호	한명숙	한정애	함진규	이에리사	이윤석	이이재	이운룡
현영희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이원욱	이장우	이재영	이인영
홍익표	홍일표	홍지만	황영철	이자스민	이종걸	이종훈	李宰榮
황주홍				이진복	이찬열	이철우	이주영
				이한구	이한성	이현승	이학재
				임수경	장윤석	장하나	인재근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전정희
				정성호	정세균	정수성	정문헌
				정청래	정희수	조경태	정진후
				조원진	조해진	주승용	조명철
				진선미	진성준	최경환	주호영
				최봉홍	최원식	최재천	최민희
				하태경	한기호	한명숙	추미애
				함진규	현영희	홍문표	한정애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영표
							홍지만

(배재정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이현승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실제 찬성 의원 209인, 반대 의원 없음, 기권 의원 없음)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12인)

찬성 의원(210인)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은희	강창일	고희선	권은희
김경협	김관영	김광립	김광진
김기선	김기춘	김기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황영철 황주홍
기권 의원(2인)
 김종대 전병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9인)
찬성 의원(208인)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은희	강창일	고희선	권은희
김경협	김관영	김광립	김광진
김기선	김기준	김기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용익	김용태	김윤덕
김을동	김장실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제남	김종태
김종훈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흠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현숙	김형태	김희국
나성린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류성결	류지영	문대성	문정림
문희상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대동	박덕흠	박범계
박병석	박성효	박수현	박완주
박원석	박인숙	박주선	박창식
박홍근	배재정	백균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병수
서영교	설훈	성완중	손인춘
송광호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기남	신의진	신장용
신학용	심상정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종범
안철수	안홍준	양승조	여상규
염동열	오병윤	오영식	원유철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승우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관석
유승희	유은혜	유인태	윤진식
윤명희	윤상현	윤재옥	이강후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명수
이군현	이낙연	이노근	이명민
이목희	이미경	이상규	이에리사
이상일	이석현	이언주	이원욱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자스민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장우	이재영	李宰榮	이종걸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철우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헌승	인재근	임수경
장윤석	장하나	전정희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문헌	정성호
정세균	정수성	정진후	정청래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해진	주승용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최경환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천	추미애	하태경
한기호	한명숙	한정애	함진규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지만	황영철	황주홍

기권 의원(1인)

현영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9인)

찬성 의원(209인)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은희	강창일	고희선	권은희
김경협	김관영	김광립	김광진
김기선	김기준	김기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용익	김용태	김윤덕
김을동	김장실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제남	김종태
김종훈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흠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현숙	김형태	김희국
나성린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류성결	류지영	문대성	문정림
문희상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대동	박덕흠	박범계
박병석	박성효	박수현	박완주
박원석	박인숙	박주선	박창식
박홍근	배재정	백균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병수
서영교	설훈	성완중	손인춘
송광호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기남	신의진	신장용
신학용	심상정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종범
 안철수 안홍준 안양승 안여상
 염동열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유인태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재옥
 윤진식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균현 이낙연 이노근
 이명수 이목희 이미경 이상규
 이에리사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李宰榮 이종걸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철우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현승 인재근 임수경
 장하나 전병헌 전정희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문헌 정성호
 정세균 정수성 정진후 정청래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해진 주승용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최경환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천 추미애 하태경
 한기호 한명숙 한정애 함진규
 현영희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지만 황영철
 황주홍

(윤재옥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실제 찬성
 의원 209인, 기권 의원 없음)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11인)

찬성 의원(209인)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은희 강창일 고희선 권은희
 김경협 김관영 김광립 김광진
 김기선 김기준 김기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성곤 김성주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용익 김용태 김윤덕 김을동
 김장실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제남 김종태 김종훈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흠 김한표 김현미 김현미
 김현숙 김형태 김희국 나성린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류성결
 류지영 문대성 문정림 문희상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대동 박덕흠 박범계 박병석
 박성효 박수현 박완주 박원석
 박인숙 박주선 박창식 박홍근
 배재정 백균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병수 서영교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영민
 신기남 신의진 신장용 신학용
 심상정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종범 안철수
 안홍준 양승조 여상규 염동열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유인태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재옥 윤진식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균현 이낙연 이노근 이명수
 이목희 이미경 이상규 이상민
 이상일 이석현 이언주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李宰榮 이종걸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철우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현승 인재근 임수경
 장윤석 장하나 전병헌 전정희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문헌
 정성호 정세균 정수성 정진후
 정청래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해진 주승용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최경환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천 추미애
 하태경 한기호 한명숙 한정애
 함진규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지만 황영철
 황주홍

기권 의원(2인)

김성찬 현영희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04인)

찬성 의원(194인)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은희	고희선	권은희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준	김기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성곤	김성주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용익
김윤덕	김을동	김장실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제남
김종태	김종훈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흠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현숙	김형태
김희국	나성린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류성결	류지영	문정림
문희상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대동	박덕흠	박범계
박병석	박성효	박수현	박완주
박창식	박홍근	배재정	백균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병수	서영교	설훈	성완중
손인춘	송광호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기남	신의진
신장용	신학용	심상정	심재권
심학봉	안종범	안철수	안홍준
양승조	여상규	염동열	오병윤
오영식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혜영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유인태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재옥
윤진식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군현	이낙연	이노근
이명수	이목희	이미경	이상규
이상민	이상일	이석현	이언주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李宰榮
이종걸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철우	이학재
인재근	임수경	장윤석	장하나
전병헌	전정희	전하진	전해철
정문헌	정성호	정세균	정수성
정진후	정청래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해진	주승용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최경환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천
추미애	하태경	한명숙	한정애
함진규	현영희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지만
황영철	황주홍		

반대 의원(3인)

박인숙 이한성 정갑윤

기권 의원(7인)

김성찬	김성태	김용태	박주선
심재철	이헌승	한기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

투표 의원(202인)

찬성 의원(200인)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은희	고희선	권은희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준	김기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상희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용익	김용태	김윤덕
김을동	김장실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제남	김종태
김종훈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흠	김한표	김현
김현숙	김형태	김희국	나성린
남인순	노웅래	류성결	류지영
문대성	문정림	문희상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대동
박덕흠	박범계	박병석	박성효
박수현	박완주	박인숙	박주선
박창식	박홍근	배재정	백균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병수	서영교	설훈	성완중
손인춘	송광호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기남	신의진
신장용	신학용	심상정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안철수	안홍준
양승조	여상규	염동열	오병윤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혜영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유인태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재옥	윤진식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균현	이낙연	이노근	이명수
이목희	이미경	이상규	이상민
이상일	이석현	이언주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李宰榮	이종결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철우	이학재	이한성
이헌승	인재근	임수경	장윤석
장하나	전병헌	전정희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문헌	정성호
정세균	정수성	정진후	정청래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해진	주승용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최경환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천	추미애	하태경
한기호	한명숙	한정애	함진규
현영희	홍문표	홍영표	홍익표
홍일표	홍지만	황영철	황주홍

기관 의원(2인)

김성곤 홍의락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04인)

찬성 의원(202인)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은희	고희선	권은희	김경협
김관영	김광진	김기선	김기준
김기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상희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용익	김용태	김윤덕
김을동	김장실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제남	김종태
김종훈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흠	김한표	김현미
김현숙	김형태	김희국	나성린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류성결
류지영	문대성	문정림	류희상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대동	박덕흠	박범계	박병석
박성효	박수현	박완주	박인숙
박주선	박창식	박홍근	배재정
백균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병수	서영교	설훈
성완중	손인춘	송광호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기남
신의진	신장용	신학용	심상정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안종범
안철수	안홍준	양승조	여상규
염동열	오병윤	오영식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혜영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유인태	유관석	유명희
윤상현	윤재옥	윤진식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균현
이낙연	이노근	이명수	이목희
이미경	이상규	이상민	이상일
이언주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李宰榮	이종결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철우
이학재	이한성	이헌승	인재근
임수경	장윤석	장하나	전정희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문헌
정성호	정세균	정수성	정진후
정청래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해진	주승용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최경환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천	추미애
하태경	한기호	한명숙	한정애
함진규	현영희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지만
황영철	황주홍		

기관 의원(2인)

김광림 김현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투표 의원(204인)

찬성 의원(202인)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은희	고희선	권은희	김경협
김관영	김광진	김기선	김기준
김기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상희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용익	김용태	김윤덕
김을동	김장실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제남	김종태
김종훈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흠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현숙	김형태	김희국
나성린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류성걸	류지영	문대성	문정림
문희상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대동	박덕흠	박범계
박병석	박성효	박수현	박완주
박인숙	박주선	박창식	박홍근
배재정	백균기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병수	서영교	설훈
성완종	손인춘	송광호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기남
신의진	신장용	신학봉	심상정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안종범
안철수	안홍준	양승조	여상규
염동열	오병윤	오영식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유인태	윤관석	윤명희	윤재옥
윤진식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균현	이낙연	이노근
이명수	이목희	이미경	이상규
이상민	이상일	이석현	이언주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이주영
이종걸	이종진	이철우	이학재
이진복	이찬열	이철휘	이수경
이한성	이헌승	인재근	임수희
장윤석	장하나	전병헌	전정희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문헌
정성호	정세균	정수성	정진후
정청래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해진	주승용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최경환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천	추미애
하태경	한기호	한명숙	한정애
함진규	현영희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지만

황영철 황주홍
기권 의원(2인)
 백재현 윤상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4인)
찬성 의원(203인)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은희	고희선	권은희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준	김기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상희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용익	김용태
김윤덕	김을동	김장실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제남
김종태	김종훈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흠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현숙	김형태
김희국	나성린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류성걸	류지영	문대성
문정림	문희상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대동	박덕흠	박범계
박병석	박성효	박수현	박완주
박인숙	박주선	박창식	박홍근
배재정	백균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병수	서영교
설훈	성완종	손인춘	송광호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기남	신의진	신장용	신학봉
심상정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안종범	안철수	안홍준	양승조
여상규	염동열	오병윤	오영식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유인태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재옥	윤진식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균현
이낙연	이노근	이명수	이목희
이미경	이상규	이상민	이석현
이언주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李 宰 榮 이 종 결 이 종 진 이 종 훈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철 우
 이 학 재 이 한 성 이 현 승 인 재 근
 임 수 경 장 윤 석 장 하 나 전 병 현
 전 정 희 전 하 진 전 해 철 정 갑 윤
 정 문 헌 정 성 호 정 세 균 정 수 성
 정 진 후 정 청 래 정 희 수 조 경 태
 조 명 철 조 원 진 조 해 진 주 승 용
 주 호 영 진 선 미 진 성 준 최 경 환
 최 민 희 최 봉 홍 최 원 식 최 재 천
 추 미 애 하 태 경 한 기 호 한 명 숙
 한 정 애 함 진 규 현 영 희 홍 문 표
 홍 영 표 홍 의 락 홍 익 표 홍 일 표
 홍 지 만 황 영 철 황 주 홍

기권 의원(1인)

민 병 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3인)

찬성 의원(202인)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동 원 강 석 호
 강 은 희 고 희 선 권 은 희 김 경 협
 김 관 영 김 광 립 김 광 진 김 기 선
 김 기 준 김 기 현 김 동 철 김 명 연
 김 무 성 김 미 희 김 민 기 김 상 민
 김 상 희 김 성 곤 김 성 주 김 성 찬
 김 성 태 김 세 연 김 승 남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영 주 김 용 익 김 용 태
 김 윤 덕 김 을 동 김 장 실 김 재 연
 김 재 원 김 재 윤 김 정 록 김 제 남
 김 종 태 김 종 훈 김 진 표 김 춘 진
 김 태 년 김 태 원 김 태 흠 김 한 표
 김 현 김 현 미 김 현 숙 김 형 태
 김 희 국 나 성 립 남 인 순 노 영 민
 노 응 래 류 성 결 류 지 영 문 대 성
 문 정 립 문 희 상 민 현 주 흠 철
 박 기 춘 박 대 동 박 덕 흠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성 효 박 수 현 박 완 주
 박 인 숙 박 주 선 박 창 식 박 홍 근
 배 재 정 백 균 기 백 재 현 변 재 일
 부 좌 현 서 기 호 서 병 수 서 영 교
 설 훈 성 완 중 손 인 춘 송 광 호
 송 영 근 송 호 창 신 경 립 신 경 민
 신 기 남 신 의 진 신 장 용 신 학 용
 심 상 정 심 재 권 심 재 철 심 학 봉

안 종 범 안 철 수 안 홍 준 양 승 조
 여 상 규 염 동 열 오 병 윤 오 영 식
 우 상 호 우 원 식 우 윤 근 원 혜 영
 유 대 운 유 성 업 유 승 민 유 승 우
 유 승 희 유 은 혜 유 인 태 윤 관 석
 윤 명 희 윤 상 현 윤 재 옥 윤 진 식
 윤 호 중 은 수 미 이 강 후 이 군 현
 이 낙 연 이 노 근 이 명 수 이 미 경
 이 상 규 이 상 민 이 상 일 이 석 현
 이 언 주 이에리사 이 완 영 이 우 현
 이 운 룡 이 원 욱 이 윤 석 이 이 재
 이 인 영 이자스민 이 장 우 이 재 영
 李 宰 榮 이 종 결 이 종 진 이 종 훈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철 우
 이 학 재 이 한 성 이 현 승 인 재 근
 임 수 경 장 윤 석 장 하 나 전 병 현
 전 정 희 전 하 진 전 해 철 정 갑 윤
 정 문 헌 정 성 호 정 세 균 정 수 성
 정 진 후 정 청 래 정 희 수 조 경 태
 조 명 철 조 원 진 조 해 진 주 승 용
 주 호 영 진 선 미 진 성 준 최 민 희
 최 봉 홍 최 원 식 최 재 천 추 미 애
 하 태 경 한 기 호 한 명 숙 한 정 애
 함 진 규 현 영 희 홍 문 표 홍 영 표
 홍 의 락 홍 익 표 홍 일 표 홍 지 만

기권 의원(1인)

윤 후 덕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06인)

찬성 의원(205인)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동 원 강 석 호
 강 은 희 고 희 선 권 은 희 김 경 협
 김 관 영 김 광 진 김 기 선 김 기 준
 김 기 현 김 동 철 김 명 연 김 무 성
 김 미 희 김 민 기 김 상 민 김 상 희
 김 성 곤 김 성 주 김 성 찬 김 성 태
 김 세 연 김 승 남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영 주 김 용 익 김 용 태 김 윤 덕
 김 을 동 김 장 실 김 재 연 김 재 원
 김 재 윤 김 정 록 김 제 남 김 종 태
 김 종 훈 김 진 표 김 춘 진 김 태 년
 김 태 원 김 태 흠 김 한 표 김 현
 김 현 미 김 현 숙 김 형 태 김 희 국
 나 성 립 남 인 순 노 영 민 김 기 준
 류 성 결 류 지 영 문 대 성 김 무 성
 민 현 주 흠 철 김 상 희 김 상 회
 박 덕 흠 박 범 계 김 성 찬 김 성 태
 박 완 주 박 홍 근 김 영 록 김 영 우
 박 재 현 변 재 일 김 용 태 김 윤 덕
 서 병 수 서 영 교 김 재 연 김 재 원
 김 장 실 김 제 남 김 종 태 김 종 태
 김 정 록 김 춘 진 김 한 표 김 태 년
 김 태 흠 김 한 표 김 현 김 현 숙
 김 형 태 김 희 국 김 현 숙 김 형 태

나성린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류성걸 류지영 문대성 문정림
 문희상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대동 박덕흠 박범계
 박병석 박성효 박수현 박완주
 박인숙 박주선 박창식 박홍근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병수 서영교
 설훈 성완중 손인춘 송광호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기남 신의진 신장용 신학봉
 심상정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안중범 안철수 안홍준 양승조
 여상규 염동열 오병윤 오영식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혜영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유인태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재옥 윤진식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낙연 이노근 이명수 이목희
 이미경 이상규 이상민 이상일
 이석현 이언주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이宰榮 이종걸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철우 이학재 이한성 이현승
 인재근 임수경 장윤석 장하나
 진병헌 진정희 진하진 진해철
 정갑윤 정문헌 정성호 정세균
 정수성 정진후 정청래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해진
 주승용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최경환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천 추미애 하태경 한기호
 한명숙 한정애 함진규 현영희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지만 황영철

기권 의원(1인)

김광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98인)

찬성 의원(180인)

강기정 강동원 강석호 강은희
 고희선 권은희 김관영 김광림
 김기선 김기준 김기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용태 김윤덕 김을동
 김장실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종태 김종훈 김진표 김태년
 김태원 김태흠 김한표 김현국
 김현미 김현숙 김형태 김희국
 나성린 노영민 노웅래 류성걸
 류지영 문대성 문정림 문희상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대동 박덕흠 박범계 박병석
 박성효 박수현 박완주 박인숙
 박주선 박창식 박홍근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병수 서영교 설훈 성완중
 손인춘 송광호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학봉 신기남 신의진
 신장용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안중범 안철수 안홍준 양승조
 여상규 염동열 오병윤 오영식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유대운
 유승민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유인태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진식 윤호중 윤후덕 이노근
 이명수 이목희 이상일 이상민
 이완영 이윤석 이장우 이종진
 이찬열 이현승 이하나 진해철
 이강후 이군현 이낙연 이상일
 이명수 이미경 이상민 이완영
 이석현 이언주 이원욱 이윤석
 이우현 이운룡 이자스민 이장우
 이이재 이인영 이종진 이종훈
 이재영 이宰榮 이찬열 이철우
 이진복 이현승 인재근 이철우
 이한성 이현승 인재근 이철우
 이현승 이찬열 이현승 인재근
 이완영 이완영 이완영 이완영
 이원욱 이원욱 이원욱 이원욱
 이자스민 이자스민 이자스민 이자스민
 이종진 이종진 이종진 이종진
 이찬열 이찬열 이찬열 이찬열
 이현승 이현승 이현승 이현승
 이한성 이한성 이한성 이한성
 장윤석 장윤석 장윤석 장윤석
 정갑윤 정갑윤 정갑윤 정갑윤
 정청래 정청래 정청래 정청래
 조원진 조원진 조원진 조원진
 조해진 조해진 조해진 조해진
 진성준 진성준 진성준 진성준
 최경환 최경환 최경환 최경환
 최민희 최민희 최민희 최민희
 추미애 추미애 추미애 추미애
 하태경 하태경 하태경 하태경
 한명숙 한명숙 한명숙 한명숙
 함진규 함진규 함진규 함진규
 현영희 현영희 현영희 현영희
 홍의락 홍의락 홍의락 홍의락
 황영철 황영철 황영철 황영철

홍 일 표 홍 지 만 황 영 철 황 주 흥
반대 의원(5인)
 김 광 진 김 미 희 김 재 연 오 병 윤
 유 성 엽
기권 의원(13인)
 강 길 부 김 상 희 김 제 남 김 춘 진
 남 인 순 심 상 정 은 수 미 이 목 희
 장 하 나 전 정 희 정 진 후 진 선 미
 한 정 애

이에리사 이 완 영 이 우 현 이 운 룡
 이 원 옥 이 윤 석 이 이 재 이 인 영
 이자스민 이 장 우 이 재 영 이 인 영
 이 종 결 이 종 진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철 우 이 학 재 이 한 성
 이 현 승 인 재 근 임 수 경 장 윤 석
 장 하 나 전 병 현 전 정 희 전 하 진
 전 해 철 정 갑 윤 정 문 현 정 세 균
 정 수 성 정 진 후 정 청 래 정 희 수
 조 경 태 조 명 철 조 원 진 조 해 진
 주 승 용 주 호 영 진 성 준 최 경 환
 최 민 희 최 봉 홍 최 원 식 추 미 애
 하 태 경 한 기 호 한 명 숙 한 정 애
 함 진 규 현 영 희 홍 문 종 홍 문 표
 홍 영 표 홍 일 표 홍 지 만 황 영 철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99인)
찬성 의원(189인)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동 원 강 석 호
 강 은 희 고 희 선 권 은 희 김 관 영
 김 광 립 김 광 진 김 기 선 김 기 준
 김 기 현 김 동 철 김 명 연 김 무 성
 김 민 기 김 상 민 김 상 희 김 성 곤
 김 성 주 김 성 찬 김 성 태 김 세 연
 김 승 남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영 주
 김 용 태 김 윤 덕 김 을 동 김 장 실
 김 재 원 김 재 윤 김 정 록 김 제 남
 김 종 태 김 종 훈 김 진 표 김 태 년
 김 태 원 김 태 흙 김 한 표 김 현
 김 현 미 김 현 숙 김 형 태 김 희 국
 나 성 립 노 영 민 노 웅 래 류 성 결
 류 지 영 문 대 성 문 정 립 문 희 상
 민 병 주 민 현 주 민 흥 철 박 기 춘
 박 대 동 박 덕 흙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성 효 박 수 현 박 완 주 박 인 숙
 박 주 선 박 창 식 박 흥 근 배 재 정
 백 군 기 백 재 현 변 재 일 부 좌 현
 서 병 수 서 영 교 설 훈 성 완 종
 손 인 춘 송 광 호 송 영 근 송 호 창
 신 경 립 신 경 민 신 기 남 신 의 진
 신 장 용 신 학 용 심 상 정 심 채 권
 심 재 철 심 학 봉 안 종 범 안 철 수
 안 흥 준 양 승 조 여 상 규 염 동 열
 오 영 식 우 상 호 우 원 식 우 윤 근
 유 대 운 유 성 엽 유 승 민 유 승 우
 유 승 희 유 은 혜 유 인 태 윤 관 석
 윤 명 희 윤 상 현 윤 재 옥 윤 진 식
 윤 호 중 윤 후 덕 이 강 후 이 군 현
 이 낙 연 이 노 근 이 명 수 이 미 경
 이 상 민 이 상 일 이 석 현 이 언 주

반대 의원(2인)
 김 미 희 김 재 연
기권 의원(8인)
 김 춘 진 남 인 순 오 병 윤 은 수 미
 이 목 희 이 종 훈 진 선 미 홍 익 표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02인)
찬성 의원(198인)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동 원 강 석 호
 강 은 희 고 희 선 권 은 희 김 관 영
 김 광 립 김 광 진 김 기 선 김 기 준
 김 기 현 김 동 철 김 명 연 김 무 성
 김 민 기 김 상 민 김 상 희 김 성 곤
 김 성 주 김 성 찬 김 성 태 김 세 연
 김 승 남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영 주
 김 용 익 김 용 태 김 윤 덕 김 을 동
 김 장 실 김 재 원 김 재 윤 김 정 록
 김 제 남 김 종 태 김 종 훈 김 진 표
 김 춘 진 김 태 년 김 태 원 김 태 흙
 김 한 표 김 현 김 현 미 김 현 숙
 김 형 태 김 희 국 나 성 립 남 인 순
 노 영 민 노 웅 래 류 성 결 류 지 영
 문 대 성 문 정 립 문 희 상 민 병 주
 민 현 주 민 흥 철 박 기 춘 박 대 동
 박 덕 흙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성 효
 박 수 현 박 완 주 박 인 숙 박 주 선
 박 창 식 박 흥 근 배 재 정 백 군 기
 백 재 현 변 재 일 부 좌 현 서 병 수

서영교	설훈	성완중	손인춘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흠
송광호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김한표	김현	김현숙	김형태
신경민	신기남	신의진	신장용	김희국	나성린	노영민	노용래
신학용	심상정	심재권	심재철	류성결	류지영	문대성	문정림
심학봉	안종범	안철수	안홍준	문희상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양승조	여상규	염동열	오영식	박기춘	박대동	박덕흠	박범계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혜영	박병석	박성효	박수현	박완주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우	박인숙	박주선	박창식	박홍근
유승희	유은혜	유인태	윤관석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윤명희	윤상현	윤재옥	윤진식	부좌현	서병수	서영교	설훈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성완중	손인춘	송광호	송영근
이균현	이노근	이명수	이목희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기남
이미경	이상민	이상일	이석현	신의진	신장용	신학용	심재권
이언주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심재철	심학봉	안종범	안철수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안홍준	양승조	여상규	염동열
이인영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오영식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李宰榮	이종결	이종진	이종훈	원혜영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철우	유승우	유은혜	유인태	윤관석
이학재	이한성	이현승	인재근	윤명희	윤상현	윤재옥	윤진식
임수경	장윤석	장하나	전병헌	윤호중	윤후덕	이강후	이균현
전정희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이낙연	이노근	이명수	이미경
정문헌	정세균	정수성	정진후	이상민	이상일	이석현	이언주
정청래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조원진	조해진	주승용	주호영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자스민
진선미	진성준	최경환	최민희	이장우	이재영	李宰榮	이종결
최봉홍	최원식	추미애	하태경	이종진	이철우	이학재	이진복
한기호	한명숙	한정애	함진규	이찬열	이철우	이학재	이한성
현영희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이현승	인재근	임수경	장윤석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지만	진병헌	진정희	전하진	전해철
황영철	황주홍			정갑윤	정문헌	정세균	정수성

기권 의원(4인)

김미희 김재연 오병윤 이낙연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2인)

찬성 의원(183인)

강기정	강길부	강석호	강은희
고희선	김관영	김광림	김기선
김기춘	김기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희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용익	김용태	김윤덕
김을동	김장실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종태	김종훈	김진표

반대 의원(6인)

김미희 김재연 김제남 심상정

장하나 정진후

기권 의원(13인)

강동원	권은희	김광진	김현미
남인순	서기호	유승희	은수미
이목희	이원욱	진선미	한정애
홍익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2인)

찬성 의원(197인)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은희	고희선	권은희	김관영
김광립	김광진	김기선	김기준
김기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미희	김상민	김상희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용익	김용태	김윤덕	김을동
김장실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제남	김종태	김종훈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흠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현숙	김형태	김희국	나성린
노영민	노웅래	류성결	류지영
문대성	문정림	문희상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대동	박덕흠
박범계	박병석	박성효	박수현
박완주	박인숙	박주선	박창식
박홍근	배재정	백균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병수
서영교	설훈	성완중	손인춘
송광호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기남	신의진	신장용
신학용	심상정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안종범	안철수	안홍준
양승조	여상규	염동열	오병윤
오영식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혜영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유인태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재옥
윤진식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균현	이낙연	이노근
이명수	이미경	이상민	이상일
이석현	이언주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李率榮	이종걸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철우	이학재	이한성	이현승
인재근	임수경	장윤석	전병헌

전정희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문헌	정세균	정수성	정진후
정청래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해진	주승용	주호영
진성준	최경환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추미애	하태경	한기호
한명숙	한정애	함진규	현영희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지만	황영철
황주홍			

기권 의원(5인)

김민기	남인순	이목희	장하나
진선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3인)

찬성 의원(179인)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은희
고희선	권은희	김관영	김광립
김기선	김기준	김기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미희	김상민
김상희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용익	김용태	김윤덕
김을동	김장실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종태	김종훈
김진표	김태년	김태원	김태흠
김한표	김현	김현숙	김형태
김희국	나성린	노영민	노웅래
류성결	류지영	문대성	문정림
문희상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대동	박덕흠	박범계
박병석	박성효	박수현	박완주
박인숙	박주선	박창식	박홍근
백균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병수	서영교	설훈
성완중	손인춘	송광호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기남	신의진
신장용	신학용	심상정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안종범	안홍준
양승조	여상규	염동열	오병윤
오영식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혜영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우	유인태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재옥	윤진식	윤후덕

이강후 이균현 이낙연 이노근
 이명수 이미경 이상규 이상민
 이상일 이석현 이언주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李宰榮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철우
 이학재 이한성 이현승 인재근
 임수경 장윤석 진병헌 진정희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문헌
 정세균 정수성 정청래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해진
 주승용 주호영 진성준 최경환
 최봉홍 최원식 추미애 하태경
 한기호 한명숙 함진규 현영희
 홍문종 홍영표 홍의락 홍일표
 홍지만 황영철 황주홍

기권 의원(24인)

강기정 김민기 김영주 김제남
 김춘진 김현미 남인순 배재정
 신경민 안철수 유승희 유은혜
 윤호중 은수미 이목희 이인영
 이종걸 장하나 정진후 진선미
 최민희 한정애 홍문표 홍익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7인)

찬성 의원(190인)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은희 고희선 권은희 김관영
 김광립 김기선 김기준 김기현
 김동철 김명연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상희 김성곤 김성주
 김성태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용익 김용태
 김윤덕 김을동 김장실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제남
 김종태 김종훈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흠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현숙 김형태
 김희국 나성린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류성걸 류지영 문대성
 문정림 문희상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대동 박덕흠
 박범계 박병석 박성효 박수현

박완주 박인숙 박주선 박창식
 박홍근 배재정 백근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병수
 서영교 설훈 성완중 손인춘
 송광호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기남 신의진 신장용 신학용
 심상정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안종범 안철수 안홍준 여상규
 염동열 오병윤 오영식 이상호
 우원식 우윤근 윤희영 유대운
 유성엽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유인태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재옥 윤진식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균현 이낙연
 이노근 이명수 이목희 이상규
 이상민 이상일 이석현 이언주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李宰榮
 이종진 이종훈 이진복 이찬열
 이철우 이학재 이한성 이현승
 인재근 임수경 장윤석 장하나
 진병헌 진정희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문헌 정수성 정진후
 정청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해진 주승용 진선미 진성준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추미애
 하태경 한명숙 한정애 함진규
 현영희 홍문종 홍영표 홍지만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영표
 황영철 황주홍

반대 의원(4인)

김광진 김무성 이종걸 최경환
 신경민 양승조 정희수

기권 의원(3인)

신경민 양승조 정희수

○출석 의원(255인)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은희 강창일 강창희
 고희선 권성동 권은희 김경협
 김관영 김광립 김광진 김기선
 김기준 김기현 김도읍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용익 김용태 김우남 김윤덕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정훈
 김재남 김종태 김종훈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호
 김태흠 김학용 김한길 김한표
 김희국 나성린 남경필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류성걸 류지영
 문대성 문병두 민병주 민현주
 문희상 민병두 박기춘 박대동
 민홍철 박덕흠 박민식 박범계
 박병석 박성효 박수현 박영선
 박완주 박원석 박인숙 박주선
 박창식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백균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병수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설훈 성완중 손인춘
 송광호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의진
 신장용 신학용 심상정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종범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염동열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기홍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유인태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재옥
 윤진식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군현 이낙연 이노근
 이명수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이상규 이상민 이상일 이상직
 이석기 이석현 이언주 이에리사
 이완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이주영
 이종걸 이종진 이종훈 이주석
 이진복 이찬열 이한구 이한성
 이학영 이현승 인재근 임수경
 이해찬 장하철 전병헌 전정몽
 장윤석 전해철 정갑윤 정몽준

정문현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수성 정진후 정청래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조현룡 주승용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영영 최경환
 최규성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최재천 추미애 하태경
 한기호 한명숙 한정애 함진규
 현영희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종
 홍지만 황영철 황주홍

○개의 시 재석 의원(226인)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은희 강창일 강창희
 고희선 권성동 권은희 김경협
 김관영 김광립 김광진 김기선
 김기준 김기현 김도읍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주
 김성찬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용익 김용태
 김우남 김을동 김재경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재남
 김종태 김종훈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흠 김학용
 김한길 김희국 남경필 남인순
 김형태 류성걸 류지영 문대성
 노웅래 류성걸 류지영 문대성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민식
 박범계 박병석 박성효 박수현
 박영선 박완주 박원석 박인숙
 박주선 박창식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백균기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설훈 성완중 손인춘 송광호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장용
 신학용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안덕수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안홍준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우원식 유기홍 유승민 유승우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재옥 은수미 이노근 이병석
 이에리사 이운룡 이인영 이주영
 이주석 이한성 임수경 이정몽
 정갑윤 정몽준

유은혜 유인태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재옥 윤진식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군현
 이낙연 이노근 이명수 이목희
 이미경 이상규 이상민 이상일
 이상직 이석기 이석현 이언주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이宰榮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해찬
 이현승 인재근 임수경 장윤석
 전정희 전해철 정갑윤 정몽준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수성 정진후 정청래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조현룡 주승용 진선미 진성준
 최경환 최규성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천 추미애 하태경
 한기호 한정애 함진규 현영희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종학 홍지만
 황영철 황주홍

○산회 시 재석 의원(44인)

강은희 권은희 김광진 김기준
 김미희 김민기 김성곤 김을동
 김재윤 김제남 김한표 김현
 남인순 류지영 문병호 민병주
 박기춘 박대동 박병석 박수현
 박완주 박인숙 부좌현 신경림
 신경민 신의진 양승조 유승희
 윤관석 윤후덕 이에리사 이원욱
 이윤석 이진복 이철우 임수경
 장하나 전병헌 정진후 조명철
 진성준 최민희 함진규 현영희

○출장 의원(4인)

박민수 심윤조 이재오 전순옥

○청가 의원(18인)

강석훈 길정우 김기식 김선동
 金永柱 김진태 김희선 김희정
 박지원 박혜자 신동우 유일호
 임내현 장병완 정우택 정호준
 최동익 황진하

○국회사무처

사무총장 정진석
 입법차장 임병규
 의사국장 전상수

○출석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국무총리 정홍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교육부장관 서남수
 국방부장관 김관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보건복지부장관 진성규
 환경부장관 윤하남
 고용노동부장관 조윤선
 여성가족부장관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 서윤진
 해양수산부장관

○출석 정부위원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이상목
 외교부제1차관 김규현
 안전행정부제2차관 이경욱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김재홍

【보고사항】

○의원 등록

의원명	선거구	소속정당	연월일
이완구	충남 부여·청양	새누리당	2013. 5. 2

○의원 당적 변경

의원명	선거구	변경 전	변경 후	연월일
강동원	전북 남원·순창	진보 정의당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2013. 5. 2

○상임위원 사임 및 보임

위원회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국회운영	강동원	정진후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2013. 5. 1
	정호준	이상직	민주당	2013. 5. 6

○교섭단체 명칭 변경

변경 전	변경 후	연월일
민주통합당	민주당	2013. 5. 6

○의안 제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전순옥 의원 대표발의)

(2013. 4. 30 전순옥·박원석·윤후덕·배재정·장하나·서영교·전병헌·최민희·민병두·전정희·배기운·심재권·이인영 의원 발의)

5월 1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3. 4. 30 정부 제출)

5월 1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순옥 의원 대표발의)

(2013. 4. 30 전순옥·배기운·최민희·유성엽·
 부좌현·이인영·전병헌·김기준·인재근·
 조정식·이해찬·김재윤·남인순 의원 발의)

5월 1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상기 의원 대표발의)

(2013. 4. 30 서상기·김세연·강은희·이만우·
 정문헌·박성호·이학재·주호영·이한성·
 박창식·김장실·박인숙·이에리사·김희정·
 권은희 의원 발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강은희
 의원 대표발의)

(2013. 4. 30 강은희·김세연·이우현·이강후·
 황영철·이학재·강길부·이에리사·김장실·
 박인숙·이주영·서상기·이한성·김태원·
 이만우·김희정·정우택·민현주·조명철·
 강석호·신의진·서용교·심학봉·손인춘·
 조원진·신경림·정의화·박대출·김상훈·
 주호영·안종범·김현숙·안홍준·윤재욱·
 이한구·이운룡·류성걸·문정림·이현재·
 김진태·김기선·이노근·신동우·한기호·
 최봉홍·유승우·홍문중·김을동·유일호·
 길정우·문대성·박성호·송광호·김한표·
 장윤석·권은희·이완영·이상일·류지영·
 李宰榮·홍지만·서병수·윤명희·박대동·
 강석훈·김재원 의원 발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
 발의)

(2013. 4. 30 김희정·윤상현·김정훈·김세연·
 정문헌·문대성·이진복·유재중·정의화·
 서용교·이한성·이학재·김장실·이주영·
 서상기·박성호 의원 발의)

이상 3건 5월 1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에 회부

농산어촌 교육진흥 특별법안(박민수 의원 대표
 발의)

(2013. 4. 30 박민수·양승조·김춘진·김영록·
 배기운·박수현·이춘석·김동철·정성호·
 김윤덕 의원 발의)

5월 2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2013. 4. 30 남인순·이학영·최동익·임수경·
 유승희·배기운·김상희·김광진·김기준·
 강기정·추미애·강창일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문헌 의원 대표
 발의)

(2013. 4. 30 정문헌·유승우·김재원·이한성·
 김영우·이에리사·김기선·황영철·이자스민·
 김세연·길정우·이이재 의원 발의)

이상 2건 5월 1일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신의진
 의원 대표발의)

(2013. 4. 30 신의진·김을동·이장우·김기선·
 박인숙·강은희·김정록·신경림·김도읍·
 서용교·길정우·손인춘·유재중·류지영 의원
 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
 발의)

(2013. 4. 30 유승희·안규백·유성엽·배기운·
 윤관석·박원석·최민희·박주선·인재근·
 민홍철·박혜자·이해찬·의원 발의)

이상 2건 5월 1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
 발의)

(2013. 4. 30 한정애·김경협·김관영·김승남·
 배재정·부좌현·이목희·인재근·전순옥·
 홍영표 의원 발의)

5월 1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

(2013. 4. 30 김명연·김정록·김도읍·박대출·
 이학재·이현재·홍지만·손인춘·민병주·
 이군현·김태원·유기준·홍문중·윤명희·
 정우택·성완중·정의화·이언주 의원 발의)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3. 4. 30 정부 제출)

이상 2건 5월 1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
 발의)

(2013. 5. 1 정청래·배기운·홍종학·백재현·
 전순옥·배재정·최민희·이춘석·추미애·
 우윤근 의원 발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

발의)

(2013. 5. 1 김영주 · 김성곤 · 이낙연 · 홍종학 · 신장용 · 김기준 · 김현미 · 이인영 · 이미경 · 정세균 · 신학용 · 김상희 · 박혜자 · 박홍근 · 강기정 · 장병완 · 조정식 의원 발의)

이상 2건 5월 2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 발의)

(2013. 5. 1 박인숙 · 이만우 · 남인순 · 조명철 · 이에리사 · 정희수 · 강기윤 · 강은희 · 염동열 · 윤명희 · 서상기 의원 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 발의)

(2013. 5. 1 박인숙 · 남인순 · 이만우 · 이에리사 · 정희수 · 강기윤 · 강은희 · 염동열 · 윤명희 · 조명철 · 서상기 의원 발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숙 의원 대표 발의)

(2013. 5. 1 김현숙 · 이현재 · 이만우 · 홍지만 · 김정록 · 서병수 · 강은희 · 류지영 · 강석훈 · 문대성 의원 발의)

이상 3건 5월 2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 의원 대표발의)

(2013. 5. 1 신학용 · 김동철 · 이미경 · 김재윤 · 배기운 · 박완주 · 윤관석 · 유성엽 · 김영환 · 박인숙 · 김성곤 · 전정희 · 윤후덕 · 민홍철 · 유기홍 · 이에리사 · 박민수 · 정청래 · 이찬열 · 김우남 · 백재현 · 김태년 의원 발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

(2013. 5. 1 우원식 · 인재근 · 전순옥 · 윤관석 · 이한성 · 배기운 · 문병호 · 정청래 · 이인영 · 홍종학 · 윤후덕 · 신장용 · 유인태 · 이해찬 · 박남춘 · 김성곤 · 김영주 · 김재윤 · 이윤석 · 최동익 · 심재권 · 민홍철 · 강동원 · 김상희 · 유성엽 의원 발의)

이상 2건 5월 2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녹색기후기금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2013. 5. 1 윤관석 · 안규백 · 부좌현 · 전병헌 · 전순옥 · 유성엽 · 이한성 · 홍종학 · 유승희 · 문병호 · 박인숙 · 남인순 · 민홍철 · 박홍근 · 임수경 · 박수현 · 민병두 · 우원식 · 장병완 · 진성준 의원 발의)

5월 2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 발의)

(2013. 5. 1 정청래 · 배기운 · 전해철 · 심재권 · 홍종학 · 백재현 · 전순옥 · 배재정 · 최민희 · 추미애 · 우윤근 의원 발의)

5월 2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 대표발의)

(2013. 5. 1 김한표 · 정희수 · 김세연 · 이강후 · 문대성 · 류지영 · 김현숙 · 이재영 · 권선동 · 정갑윤 의원 발의)

5월 2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고위공직후보자 사전검증에 관한 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

(2013. 5. 1 함진규 · 강석호 · 이이재 · 안효대 · 김태흠 · 이노근 · 조현룡 · 이헌승 · 이종진 · 이채익 의원 발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 발의)

(2013. 5. 1 강창일 · 배기운 · 추미애 · 유인태 · 주승용 · 조정식 · 민홍철 · 장병완 · 김재윤 · 박남춘 · 남인순 · 이학영 · 전정희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숙 의원 대표 발의)

(2013. 5. 1 김현숙 · 이만우 · 이현재 · 홍지만 · 김정록 · 노철래 · 정갑윤 · 김명연 · 김기현 · 강석훈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 발의)

(2013. 5. 1 강창일 · 배기운 · 추미애 · 유인태 · 주승용 · 조정식 · 민홍철 · 장병완 · 김재윤 · 박남춘 · 남인순 · 이학영 · 전정희 의원 발의)

이상 4건 5월 2일 안전행정부위원회에 회부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 발의)

(2013. 5. 1 김우남 · 배기운 · 정성호 · 최민희 · 안민석 · 김재윤 · 홍종학 · 이낙연 · 김세연 · 유승우 의원 발의)

5월 2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

(2013. 5. 1 김우남 · 이명수 · 배기운 · 이낙연 · 안민석 · 김세연 · 전하진 · 전병헌 · 김영록 · 강기정 · 조정식 · 김춘진 의원 발의)

5월 2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회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숙 의원 대표발의)

(2013. 5. 1 김현숙·이현재·이만우·홍지만·
 김정록·정갑윤·서병수·강은희·류지영·
 강석훈·신경림 의원 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2013. 5. 1 김상훈·현영희·이채익·권은희·
 김성태·박민식·김세연·심학봉·정희수·
 유승우·이만우 의원 발의)

이상 2건 5월 2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2013. 5. 1 정청래·배기운·김성곤·홍종학·
 백재현·전순옥·배재정·이춘석·추미애·
 우윤근 의원 발의)

5월 4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현숙 의원 대표발의)

(2013. 5. 1 김현숙·이현재·이만우·홍지만·
 김태원·김정록·정갑윤·김명연·김기현·
 서병수·정우택·강은희·류지영·강석훈·
 신경림 의원 발의)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숙 의원 대표
 발의)

(2013. 5. 1 김현숙·이만우·홍지만·김정록·
 정갑윤·김명연·신경림·강은희·강석훈·
 문대성 의원 발의)

이상 2건 5월 2일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
 발의)

(2013. 5. 2 윤재옥·이만우·유승우·김동완·
 박성호·홍문표·조명철·고희선·박인숙·
 황영철 의원 발의)

5월 3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김정훈 의원 대표발의)

(2013. 5. 2 김정훈·박민식·김재경·안덕수·
 박대동·김중훈·조원진·성완중·김용태·
 신동우·이한성·신성범·이학재·이종훈·
 송광호·나성린·정의화·최경환 의원 발의)

5월 3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
 발의)

(2013. 5. 2 이현재·정희수·이학재·김기현·

이우현·권은희·조명철·김을동·손인춘·
 이노근·김기선·서용교 의원 발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

(2013. 5. 2 이현재·정희수·이학재·김기현·
 이우현·권은희·조명철·김을동·손인춘·
 이노근·김기선·서용교 의원 발의)

이상 2건 5월 3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
 위원회에 회부

지방소방재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송광호 의원
 대표발의)

(2013. 5. 2 송광호·경대수·김종태·김영우·
 박성호·민홍철·박덕흠·이채익·이재오·
 주영순·이강후·조원진·이찬열·문정림 의원
 발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 의원 대표발의)

(2013. 5. 2 류지영·김정록·안홍준·김한표·
 손인춘·조명철·이한성·윤명희·전정희·
 강석호·김상희·주영순·신의진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
 발의)

(2013. 5. 2 황영철·김재원·유승우·이한성·
 김영우·송영근·김기현·한기호·김기선·
 이에리사 의원 발의)

이상 3건 5월 3일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 의원 대표발의)

(2013. 5. 2 박인숙·이명수·신학용·이만우·
 윤관석·이학재·유성엽·김영우·김정록·
 조명철·김광진·유승민·남인순·이자스민
 의원 발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

(2013. 5. 2 이현재·정희수·이학재·김기현·
 이우현·권은희·조명철·김을동·손인춘·
 이노근·김기선·서용교 의원 발의)

이상 2건 5월 3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회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 의원 대표
 발의)

(2013. 5. 2 류지영·강은희·김정록·이학재·
 안홍준·윤상현·송영근·김한표·손인춘·
 조명철·이한성·신경림·윤명희·심윤조·

이자스민 · 민현주 · 강석호 · 주영순 · 신의진 의원 발의)

한국보육진흥원법안(류지영 의원 대표발의)

(2013. 5. 2 류지영 · 김정록 · 김한표 · 정우택 · 손인춘 · 조명철 · 이한성 · 신경림 · 윤명희 · 심윤조 · 강석호 · 주영순 · 이자스민 · 신의진 의원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동익 의원 대표발의)

(2013. 5. 2 최동익 · 배기운 · 이인영 · 홍종학 · 정청래 · 이윤석 · 민홍철 · 양승조 · 한명숙 · 유승희 · 강동원 · 김광진 · 유성엽 · 김관영 · 남인순 · 이낙연 · 도종환 의원 발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일 의원 대표발의)

(2013. 5. 2 이상일 · 권은희 · 박인숙 · 서상기 · 윤명희 · 이만우 · 이학재 · 이한성 · 조명철 · 한선교 의원 발의)

5월 3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 발의)

(2013. 5. 3 이주영 · 이만우 · 김상민 · 이한성 · 조명철 · 김한표 · 박성효 · 이현재 · 박인숙 · 안홍준 의원 발의)

5월 6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님을 위한 행진곡」 5.18 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안

(2013. 5. 3 강기정 · 배기운 · 이종걸 · 박혜자 · 전해철 · 서영교 · 박남춘 · 이찬열 · 김영록 · 최원식 · 김현 · 이미경 · 김우남 · 이석현 · 김성곤 · 노영민 · 박지원 · 오병윤 · 박주선 · 우윤근 · 유기홍 · 원혜영 · 유은혜 · 이낙연 · 조정식 · 김용익 · 이해찬 · 이춘석 · 이학영 · 김영주 · 김춘진 · 김동철 · 안민석 · 오영식 · 박홍근 · 진성준 · 이용섭 · 이인영 · 홍종학 · 김경협 · 김진표 · 신기남 · 박원석 · 김성주 · 유승희 · 백재현 · 임내현 · 강창일 · 김관영 · 김광진 · 장병완 · 전병헌 · 김태년 · 배재정 · 이원욱 · 김윤덕 의원 발의)

5월 6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길부 의원 대표발의)

(2013. 5. 3 강길부 · 이노근 · 권은희 · 박성호 · 문대성 · 박대동 · 李宰榮 · 이만우 · 이한성 · 강은희 · 이인영 의원 발의)

5월 6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

발의)

(2013. 5. 3 김세연 · 유승우 · 이만우 · 이주영 · 이학재 · 송영근 · 이한성 · 조명철 · 강은희 · 박인숙 · 김태원 · 이에리사 의원 발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

(2013. 5. 3 김세연 · 유승우 · 이낙연 · 이주영 · 권은희 · 이학재 · 송영근 · 조명철 · 이만우 · 강은희 · 윤관석 · 박인숙 · 김태원 · 이에리사 의원 발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후 의원 대표 발의)

(2013. 5. 3 이강후 · 이우현 · 이만우 · 강은희 · 김동완 · 이명수 · 김한표 · 민홍철 · 손인춘 · 주영순 · 한기호 · 김상훈 · 이이재 의원 발의)
이상 3건 5월 6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6·25 참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정문헌 의원 대표발의)

(2013. 5. 3 정문헌 · 송광호 · 이이재 · 김희선 · 김희정 · 황영철 · 김재원 · 홍지만 · 한기호 · 권성동 · 김기선 · 원유철 · 김진태 · 유승민 · 정병국 · 손인춘 · 김성찬 · 송영근 · 김영우 · 김종태 의원 발의)

5월 6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

(2013. 5. 3 이학재 · 이만우 · 유승우 · 이현재 · 손인춘 · 하태경 · 서상기 · 김장실 · 박인숙 · 조원진 의원 발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선 의원 대표 발의)

(2013. 5. 3 김희선 · 유승우 · 김영우 · 이명수 · 민병주 · 정성호 · 이한성 · 김진태 · 전하진 · 김종훈 의원 발의)

이상 2건 5월 6일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황진하 의원 대표발의)

(2013. 5. 3 황진하 · 김종태 · 송영근 · 정문헌 · 김영우 · 박성호 · 윤후덕 · 안덕수 · 조명철 · 한기호 · 민홍철 · 박인숙 · 문정림 · 박상은 의원 발의)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황진하 의원 대표발의)

(2013. 5. 3 황진하 · 김종태 · 송영근 · 정문헌 · 김영우 · 박성호 · 윤후덕 · 안덕수 · 조명철 · 한기호 · 민홍철 · 박인숙 · 문정림 · 박상은 의원

발의)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진하 의원 대표발의)

(2013. 5. 3 황진하·김종태·송영근·정문헌·김영우·박성호·윤후덕·안덕수·조명철·한기호·민홍철·박인숙·문정림·박상은 의원 발의)

이상 3건 5월 6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안(안홍준 의원 대표발의)

(2013. 5. 3 안홍준·이완영·손인춘·정문헌·고희선·이한성·정의화·이만우·남경필·최동익·조명철·이재영·문정림·이찬열·최봉홍·이주영·윤재옥·강길부·이낙연·이자스민 의원 발의)

5월 6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회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

(2013. 5. 3 심재철·김태원·이명수·조명철·이현재·이한성·김상민·박상은·김태흠·안효대·정우택·유기준·김장실·박창식·길정우·황우여·김명연·고희선·윤재옥·정문헌 의원 발의)

어린이안전기본법안(안홍준 의원 대표발의)

(2013. 5. 3 안홍준·이완영·류지영·손인춘·정문헌·고희선·이한성·정의화·이만우·남경필·최동익·조명철·이재영·문정림·이찬열·최봉홍·이주영·윤재옥·이자스민·이낙연·강길부 의원 발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 의원 대표발의)

(2013. 5. 3 류지영·김정록·안홍준·윤상현·송영근·김한표·손인춘·조명철·이한성·윤명희·심윤조·강석호·이자스민·주영순·신의진 의원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동익 의원 대표발의)

(2013. 5. 3 최동익·이윤석·민홍철·유승희·김관영·한명숙·이낙연·도종환·이학영·안홍준·김성주·양승조 의원 발의)

이상 4건 5월 6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

(2013. 5. 3 정성호·윤관석·이찬열·이만우·배기운·이낙연·김승남·김현미·전병헌·이상직 의원 발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우 의원 대표발의)

(2013. 5. 3 이장우·이명수·이종진·이노근·안효대·박상은·이현승·김을동·신의진·손인춘·박대출·김도읍·이철우·이한성·이만우·정우택·이에리사 의원 발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노근 의원 대표발의)

(2013. 5. 3 이노근·정수성·이만우·강은희·이한성·이완영·박인숙·안홍준·이명수·이에리사 의원 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이재 의원 대표발의)

(2013. 5. 3 이이재·김희국·권은희·민현주·李宰榮·이종훈·박인숙·김중훈·김동완·강석훈·이강후 의원 발의)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진하 의원 대표발의)

(2013. 5. 3 황진하·김종태·송영근·정문헌·김영우·박성호·윤후덕·안덕수·조명철·한기호·민홍철·박인숙·문정림·박상은 의원 발의)

이상 5건 5월 6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국회의원(김진태) 징계안

(2013. 5. 3 심재권 의원 요구)

5월 3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

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

(2013. 5. 6 심재철·이만우·조명철·유기준·박상은·김태흠·안효대·정우택·박창식·김장실·김명연·고희선·김학용·길정우·윤재옥·정문헌·송광호 의원 발의)

5월 14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

(2013. 5. 6 김학용·최재성·노철래·김희선·김도읍·권성동·이춘석·김춘진·박범계·한기호·유기준·유승우·경대수·류지영·조명철·김성태·황영철·이학재·문정림 의원 발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

(2013. 5. 6 김학용·최재성·노철래·김희선·김도읍·권성동·이춘석·김춘진·박범계·한기호·유기준·유승우·경대수·류지영·조명철·김성태·황영철·이학재·문정림 의원 발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준 의원 대표발의)

(2013. 5. 6 김기준·김윤덕·김재윤·김태년·

박남춘 · 배기운 · 유승희 · 윤관석 · 이낙연 · 정청래 의원 발의)

이상 3건 정부위원회에 회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 발의)

(2013. 5. 6 김학용 · 최재성 · 노철래 · 김희선 · 김도읍 · 권성동 · 이춘석 · 김춘진 · 박범계 · 한기호 · 유기준 · 유승우 · 경대수 · 류지영 · 조명철 · 김성태 · 황영철 · 이학재 · 문정림 의원 발의)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성 의원 대표발의)

(2013. 5. 6 문대성 · 이만우 · 한선교 · 이우현 · 하태경 · 이완영 · 김정훈 · 김현숙 · 김한표 · 이에리사 의원 발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원석 의원 대표발의)

(2013. 5. 6 박원석 · 박홍근 · 강동원 · 서기호 · 심상정 · 김성주 · 장하나 · 김제남 · 정진후 · 최동익 · 김용익 의원 발의)

이상 3건 5월 7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2013. 5. 6 최민희 · 박민수 · 유성엽 · 전순옥 · 배기운 · 김성곤 · 윤관석 · 전해철 · 강동원 · 정청래 · 홍종학 의원 발의)

5월 7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

(2013. 5. 6 김학용 · 최재성 · 노철래 · 김희선 · 김도읍 · 권성동 · 이춘석 · 김춘진 · 박범계 · 한기호 · 유기준 · 유승우 · 경대수 · 류지영 · 조명철 · 김성태 · 황영철 · 이학재 · 문정림 의원 발의)

5월 7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장실 의원 대표 발의)

(2013. 5. 6 김장실 · 이학재 · 김태원 · 이한성 · 조명철 · 박인숙 · 이인영 · 전정희 · 김희국 · 이에리사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 발의)

(2013. 5. 6 김학용 · 이한성 · 유승우 · 한기호 · 김태원 · 최봉홍 · 이상일 · 김상민 · 김용태 · 박창식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 발의)

(2013. 5. 6 김민기 · 윤후덕 · 전병현 · 윤관석 · 정청래 · 부좌현 · 이찬열 · 최원식 · 김승남 · 김성곤 · 전순옥 · 문병호 의원 발의)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은 의원 대표발의)

(2013. 5. 6 박상은 · 이장우 · 안효대 · 이명수 · 박남춘 · 강석호 · 유승우 · 홍일표 · 최원식 · 윤진식 · 최봉홍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수성 의원 대표발의)

(2013. 5. 6 정수성 · 김태환 · 박완주 · 김동완 · 이한성 · 심학봉 · 서병수 · 조원진 · 김을동 · 여상규 의원 발의)

이상 5건 5월 7일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

(2013. 5. 6 김학용 · 최재성 · 노철래 · 김희선 · 김도읍 · 권성동 · 이춘석 · 김춘진 · 박범계 · 한기호 · 유기준 · 유승우 · 경대수 · 류지영 · 조명철 · 김성태 · 황영철 · 이학재 · 문정림 의원 발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2013. 5. 6 김민기 · 안규백 · 이찬열 · 김재윤 · 김춘진 · 김성곤 · 인재근 · 백재현 · 박기춘 · 백군기 의원 발의)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 발의)

(2013. 5. 6 김민기 · 안규백 · 이찬열 · 김재윤 · 김춘진 · 김성곤 · 인재근 · 백재현 · 김승남 · 박기춘 · 백군기 의원 발의)

이상 3건 5월 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 발의)

(2013. 5. 6 김학용 · 최재성 · 노철래 · 김희선 · 김도읍 · 권성동 · 이춘석 · 김춘진 · 박범계 · 한기호 · 유기준 · 유승우 · 경대수 · 류지영 · 조명철 · 김성태 · 황영철 · 이학재 · 문정림 의원 발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성 의원 대표 발의)

(2013. 5. 6 문대성 · 이만우 · 한선교 · 이우현 · 하태경 · 이완영 · 김정훈 · 김현숙 · 김한표 · 이에리사 의원 발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운 의원 대표 발의)

(2013. 5. 6 강기운 · 이만우 · 정문현 · 이명수 · 박성호 · 김상민 · 김기선 · 이완영 · 이낙연 · 백재현 의원 발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운 의원 대표발의)

(2013. 5. 6 강기운 · 유승우 · 이만우 · 이한성 · 이명수 · 이윤석 · 김기선 · 이완영 · 이낙연 · 백재현 의원 발의)

**이상 4건 5월 7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

(2013. 5. 6 김학용 · 최재성 · 노철래 · 김희선 · 김도읍 · 권성동 · 이춘석 · 김춘진 · 박범계 · 한기호 · 유기준 · 유승우 · 경대수 · 류지영 · 조명철 · 김성태 · 황영철 · 이학재 · 문정림 의원 발의)

5월 7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

(2013. 5. 6 김학용 · 최재성 · 노철래 · 김희선 · 김도읍 · 권성동 · 이춘석 · 김춘진 · 박범계 · 한기호 · 유기준 · 유승우 · 경대수 · 류지영 · 조명철 · 김성태 · 황영철 · 이학재 · 문정림 의원 발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동익 의원 대표발의)

(2013. 5. 6 최동익 · 안홍준 · 유승희 · 김성곤 · 배기운 · 김재윤 · 전순옥 · 한명숙 · 정청래 · 김태년 의원 발의)

이상 2건 5월 7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 5. 7 국회운영위원장 제출)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이상 3건 2013. 5. 7 안전행정위원장 제출)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3. 5. 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6건 2013. 5. 7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3건 2013. 5. 7 환경노동위원장 제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3건 2013. 5. 7 국토교통위원장 제출)

○의안 심사**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2013년도 기술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2013년도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3건 2013. 4. 18 정부 제출)

(이상 3건 원안대로 의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2013년도 기술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2013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2013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2013년도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5건 2013. 4. 18 정부 제출)

(이상 5건 수정하여 의결)

이상 8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경기도 여주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2013. 3. 29 정부 제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안(박성호 의원 대표발의)

(2013. 3. 29 박성호 · 김기선 · 유승우 · 박덕흠 · 金永柱 · 윤재옥 · 황영철 · 고희선 · 강기운 · 이찬열 · 유대운 · 백재현 · 박남춘 의원 발의)

(이상 2건 수정하여 의결)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 발의)

(2012. 11. 8 진선미 · 윤후덕 · 金永柱 · 신경민 · 유대운 · 김민기 · 문희상 · 한정애 · 우원식 · 홍종학 · 강기정 · 남인순 · 인재근 · 유성엽 · 김영환 의원 발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 12. 27 정부 제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환 의원 대표 발의)

(2013. 3. 11 김태환·김재경·권은희·이현재·정수성·정희수·김기선·윤재옥·최봉홍·황영철·이철우·심학봉·김명연·고희선 의원 발의)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2012. 8. 21 정청래·강동원·김관영·김광진·김미희·김선동·김재윤·김춘진·문병호·민홍철·박민수·박원석·배기운·설훈·신경민·심상정·안민석·이낙연·이미경·이학영·임내현·장하나·전병헌·전정희·전해철·정성호·주승용·최동익·최민희·최재천·홍영표 의원 발의)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

(2012. 8. 22 김경협·강동원·배재정·심상정·원혜영·은수미·이미경·최민희·한명숙·한정애·홍영표 의원 발의)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수경 의원 대표발의)

(2012. 8. 23 임수경·강기정·김관영·김광진·김기준·김민기·김상희·김용익·김현·김현미·남인순·도종환·박남춘·박민수·박홍근·배재정·백군기·부좌현·서영교·설훈·신경민·신기남·신장용·안민석·우상호·유기홍·유대운·유성엽·유은혜·유인태·은수미·이목희·이상직·이석현·이원욱·이인영·이찬열·임내현·장병완·전정희·전해철·정진후·진선미·추미애·최규성·최동익·최민희·최재성·최재천·한정애·홍의락·홍익표 의원 발의)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

(2012. 8. 28 윤재옥·홍지만·김희국·김상훈·권은희·서상기·유승민·유승우·주호영·조원진 의원 발의)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규 의원 대표발의)

(2012. 9. 6 이상규·정진후·노희찬·김선동·오병윤·박원석·김제남·이석기·김재연·김미희 의원 발의)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 10. 26 정부 제출)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운 의원 대표발의)

(2012. 12. 7 강기운·박성호·이명수·권성동·김정록·이만우·이노근·김태원·신성범·이낙연 의원 발의)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과

예우 등에 관한 특별법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

(2012. 10. 18 조경태·백재현·배재정·정세균·김제남·심상정·노희찬·민홍철·김성주·이원욱·이석현 의원 발의)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과 정신계승 보상 예우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진복 의원 대표발의)

(2012. 11. 2 이진복·박근혜·서용교·김재원·김세연·유재중·하태경·박민식·김희정·이주영·안홍준·유기준·이재균·이현승·김정훈·박성호·김도읍·정의화·강기운·서병수·나성린 의원 발의)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과 예우 등에 관한 특별법안(설훈 의원 발의)

(2012. 11. 22 설훈 의원 외 126인 발의)
(이상 13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15건 안전행정위원장 보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 발의)

(2012. 6. 14 박덕흠·김세연·유일호·안홍준·한선교·김용태·신동우·윤상현·이우현·정두언·송광호·李宰榮·박대출·김동완·이노근·주영순·정우택·박창식 의원 발의)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

(2012. 9. 20 홍문표·김영록·노철래·김춘진·정문헌·김우남·김태환·유성엽·윤명희·강석호·주영순·정희수·하태경 의원 발의)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 10. 9 정부 제출)
(이상 3건 수정하여 의결)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

(2013. 1. 14 홍문표·유승우·김우남·정문헌·이한성·유성엽·김성곤·김태원·이자스민·김춘진·정희수·한기호·김재원·박대동·최경환·고희선·윤명희·김근태·박상은·김영록·윤재옥·김태흠·강석호·김동완·유기준·김상민·이철우·함진규·김종태·주승용·송광호·이이재·이인제·김학용·김한표 의원 발의)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윤석 의원 대표발의)

(2013. 2. 4 장윤석·유승민·유승우·류지영·박덕흠·신성범·정문헌·박인숙·김성곤·김영우·이에리사·박민수 의원 발의)

(이상 2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5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2012. 12. 31 이언주·우윤근·김영환·최재성·김승남·박홍근·박완주·양승조·정호준·강기정 의원 발의)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림 의원 대표발의)

(2013. 1. 25 문정림·이인제·이낙연·김정록·홍지만·이명수·이자스민·金永柱·안홍준·김희국·심학봉·문대성·류지영 의원 발의)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 11. 12 정부 제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2013. 3. 20 오제세·최동익·배기운·문병호·민홍철·전해철·홍종학·이한성·안홍준·유재중 의원 발의)

(이상 2건 수정하여 의결)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 의원 대표발의)

(2012. 7. 6 류지영·장윤석·고희선·정성호·이현재·주영순·김춘진·이종훈·이현승·송영근·최봉홍·김동완 의원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동익 의원 대표발의)

(2012. 7. 9 최동익·우윤근·배재정·이상민·전정희·도종환·김상희·장하나·안홍준·박원석·은수미·백군기·유은혜·김성주 의원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 10. 22 정부 제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신의진 의원 대표발의)

(2013. 1. 15 신의진·이노근·신경림·박창식·고희선·윤명희·손인춘·김기선·박덕흠·이완영 의원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림 의원 대표발의)

(2013. 1. 25 문정림·이인제·김정록·홍지만·이명수·이자스민·金永柱·안홍준·김희국·심학봉·문대성·류지영 의원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 의원 대표발의)

(2013. 2. 12 김태원·이한성·한선교·박인숙·강은희·이낙연·정희수·민현주·이노근·이명수 의원 발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2012. 9. 7 오제세·우윤근·양승조·김성주·박완주·김관영·이낙연·이석현·진성준·김동철 의원 발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호 의원 대표발의)

(2012. 12. 7 박성호·유승우·박인숙·김세연·정갑윤·강기운·정문헌·이현재·김태원·홍지만 의원 발의)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

(2012. 6. 28 김기선·이한성·이노근·이만우·최민희·정갑윤·김세연·민홍철·주승용·권성동·염동열·한기호·서용교·이종진·김진태·정성호·윤진식·김성곤·김성찬·윤영석 의원 발의)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2012. 9. 17 오제세·김우남·홍종학·최동익·이낙연·문병호·박민수·심재권·진성준·김춘진·이석현 의원 발의)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

(2012. 11. 30 백재현·김우남·강기정·장병완·배기운·정청래·안민석·박남춘·이찬열·김진표·최재성 의원 발의)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호 의원 대표발의)

(2012. 12. 7 박성호·유승우·박인숙·김세연·정갑윤·강기운·정문헌·이현재·김태원·홍지만 의원 발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2012. 12. 31 이언주·우윤근·김영환·최재성·김승남·박홍근·박완주·양승조·정호준·강기정 의원 발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익 의원 대표발의)

(2013. 1. 29 김용익 · 이목희 · 장병완 · 양승조 · 도종환 · 박홍근 · 이학영 · 배재정 · 이미경 · 김현 의원 발의)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 1. 21 정부 제출)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림 의원 대표 발의)

(2013. 1. 25 문정림 · 이인제 · 김정록 · 홍지만 · 이명수 · 이자스민 · 金永柱 · 안홍준 · 김희국 · 심학봉 · 문대성 · 류지영 의원 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주 의원 대표 발의)

(2012. 7. 27 이연주 · 김영환 · 김기준 · 박홍근 · 윤후덕 · 장병완 · 전정희 · 송호창 · 유인태 · 안규백 의원 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숙 의원 대표 발의)

(2012. 11. 29 김현숙 · 강석훈 · 홍지만 · 문대성 · 강은희 · 민현주 · 민병주 · 신의진 · 이완영 · 이자스민 의원 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주 의원 대표 발의)

(2012. 12. 31 이연주 · 인재근 · 최동익 · 장하나 · 박홍근 · 박원석 · 우윤근 · 이상민 · 김기준 · 김영환 · 박범계 의원 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 발의)

(2013. 1. 24 남인순 · 안민석 · 인재근 · 김용익 · 최동익 · 우원식 · 유성엽 · 이학영 · 배기운 · 김영환 · 이미경 · 전정희 · 홍영표 · 김광진 · 심재권 · 이상직 · 조정식 · 김재윤 의원 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 의원 대표 발의)

(2013. 2. 1 류지영 · 문정림 · 민현주 · 김정록 · 신경림 · 김희국 · 신의진 · 유재중 · 박덕흠 · 심학봉 · 金永柱 의원 발의)

(이상 21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25건 보건복지위원장 보고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

(2012. 7. 17 이주영 · 김성찬 · 김정록 · 강창일 · 민홍철 · 이한성 · 안홍준 · 이만우 · 강은희 ·

주영순 · 이만우 의원 발의)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

(2012. 9. 14 이완영 · 경대수 · 김상민 · 김성태 · 민홍철 · 박성효 · 서용교 · 이종훈 · 주영순 · 최봉홍 의원 발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 12. 13 정부 제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 9. 20 정부 제출)

(이상 4건 수정하여 의결)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

(2012. 11. 14 홍영표 · 은수미 · 박수현 · 우원식 · 장하나 · 박남춘 · 진성준 · 전병헌 · 안규백 · 이석현 의원 발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2013. 1. 30 한정애 · 김관영 · 김영주 · 노영민 · 배재정 · 심상정 · 우원식 · 은수미 · 장하나 · 전순옥 · 홍영표 · 한명숙 의원 발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

(2013. 1. 31 안민석 · 박남춘 · 이찬열 · 장병완 · 이원욱 · 김현미 · 강기정 · 김우남 · 윤호중 · 박주선 · 김관영 · 조정식 · 원혜영 · 김진표 의원 발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주영순 의원 대표발의)

(2013. 2. 7 주영순 · 이강후 · 정희수 · 이만우 · 강은희 · 김태원 · 최봉홍 · 이종진 · 김상민 · 서용교 · 박대동 의원 발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2013. 4. 5 한정애 · 김경협 · 변재일 · 심상정 · 우원식 · 은수미 · 이완영 · 장하나 · 전순옥 · 한명숙 · 홍영표 의원 발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

(2012. 11. 22 김성태 · 최봉홍 · 권성동 · 전하진 · 김영우 · 김상민 · 김세연 · 김용태 · 이완영 · 나성린 · 박상은 · 정의화 · 윤명희 · 이종훈 · 송광호 · 신성범 · 박민식 의원 발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2012. 12. 21 정부 제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 9. 20 정부 제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

(2013. 1. 2 김경협 · 김기준 · 민홍철 · 배기운 · 안규백 · 유기홍 · 유성엽 · 윤관석 · 은수미 · 이원욱 · 인재근 · 전정희 · 한명숙 · 한정애 · 홍영표 의원 발의)

(이상 9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13건 환경노동위원회 보고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

(2013. 4. 10 강석호 · 이현승 · 이명수 · 이종진 · 함진규 · 홍문중 · 이이재 · 이노근 · 윤진식 · 김태흠 의원 발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우 의원 대표발의)

(2012. 10. 4 이철우 · 이종진 · 김세연 · 권은희 · 김을동 · 조현룡 · 이노근 · 안효대 · 함진규 · 이명수 · 강석호 · 이장우 · 김기현 · 신의진 의원 발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2013. 1. 9 주승용 · 유대운 · 김승남 · 김성곤 · 이윤석 · 민홍철 · 배기운 · 신장용 · 박기춘 · 정청래 의원 발의)

(이상 3건 수정하여 의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 12. 17 정부 제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노근 의원 대표발의)

(2013. 2. 4 이노근 · 신의진 · 홍문중 · 김동완 · 박인숙 · 함진규 · 이완영 · 김한표 · 강길부 · 이명수 · 이이재 · 이장우 · 이현승 · 김태흠 의원 발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

(2013. 2. 5 한기호 · 정희수 · 황영철 · 김용태 · 송영근 · 이철우 · 최봉홍 · 정문헌 · 조현룡 · 김진태 의원 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 9. 19 정부 제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의원 대표발의)

(2013. 1. 16 정희수 · 이명수 · 박인숙 · 한기호 · 정성호 · 김동완 · 김태원 · 권은희 · 고희선 · 김태환 의원 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의원 대표발의)

(2013. 1. 17 정희수 · 이명수 · 박대동 · 박인숙 · 한기호 · 정성호 · 김태원 · 권은희 · 고희선 · 김태환 의원 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 의원 대표발의)

(2013. 1. 30 김태원 · 金永柱 · 정희수 · 김세연 · 이한성 · 이명수 · 박인숙 · 심재철 · 박성호 · 이에리사 의원 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李宰榮 의원 대표발의)

(2013. 2. 26 李宰榮 · 김정록 · 이명수 · 이만우 · 박인숙 · 이한성 · 서용교 · 손인춘 · 정의화 · 김을동 의원 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이재 의원 대표발의)

(2013. 4. 9 이이재 · 박인숙 · 김희국 · 권은희 · 민현주 · 李宰榮 · 이종훈 · 김종훈 · 김동완 · 이재오 · 이종진 · 김기선 · 이명수 · 강석호 의원 발의)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 의원 대표발의)

(2012. 7. 16 김희국 · 이한성 · 문대성 · 권은희 · 유승민 · 정우택 · 윤진식 · 나성린 · 정의화 · 여상규 · 주영순 · 김재원 · 이만우 · 주호영 · 이종진 · 김종훈 · 손인춘 · 이에리사 의원 발의)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안효대 의원 대표발의)

(2013. 2. 4 안효대 · 이재근 · 남경필 · 황진하 · 이만우 · 김태원 · 염동열 · 박민식 · 김세연 · 박대동 · 정몽준 · 강은희 의원 발의)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

(2013. 4. 12 박수현 · 주승용 · 이윤석 · 윤후덕 · 박남춘 · 배기운 · 김영록 · 신장용 · 변재일 · 김관영 · 김현미 · 조정식 · 김태흠 · 박민수 · 민홍철 · 박혜자 · 이장우 · 문병호 의원 발의)

(이상 12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15건 국토교통위원회 보고

○의안 철회**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 의원 대표발의)**

(2013. 4. 17 김태원·유승우·정희수·김재원·
이만우·이명수·박성호·강기윤·정우택·
이에리사·안홍준·박인숙·조명철 의원 발의)
4월 30일 발의자 철회 요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2013. 4. 18 김상훈·현영희·심학봉·이채익·
이우현·유승우·김성태·이낙연·정희수·
권은희·박민식·여상규·김세연·이한성·
조명철·이만우 의원 발의)

5월 1일 발의자 철회 요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
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운룡 의원
대표발의)**

(2013. 4. 18 이운룡·김성태·박대동·박성호·
서용교·윤명희·이주영·이한성·이현재·
정문헌·최봉홍·하태경·한기호 의원 발의)

5월 3일 발의자 철회 요구

○청원 제출

**지방분권강화 및 지방자치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청원**

(2013. 4. 30 대구 북구 대현동 248번지 황한
식으로부터 황주홍 의원의 소개로 제출)

5월 2일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

○서면질문서 제출

학생자치법정에 관한 서면질문서

(2013. 5. 2 강기윤 의원 제출)

○서면답변서 제출

**제주민군복합항 등에 관한 서면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아동청소년 업무 일원화와 우리나라 입양실태
에 관한 서면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이상 2건 2013. 5. 2 정부 제출)

**아동정책의 여성가족부로의 이관 및 미혼모 지
원 확대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2013. 5. 3 정부 제출)

(이상 3건 질문서와 함께 부록으로 보존함)

○보고서 제출

금융안정보고서

(2013. 4. 30 한국은행 제출)

4월 30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